연구보고 R474 / 2004. 12.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 전략

서 진 교 연 구 위 원
임 소 영 연 구 원
김 상 현 전문연구원
임 송 수 연 구 위 원
이 재 옥 선임연구위원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서 진 교	연 구 위 원	연구총괄
임 소 영	연 구 원	제2장 및 제4장, 5장 6장 일부 집필
김 상 현	전문연구원	제2장 및 제4장 일부 집필
임 송 수	연 구 위 원	제2장 및 제5장 일부 집필
이 재 옥	선임연구위원	제2장 및 제3장 일부 집필

머 리 말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과 그 이후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도출까지의 일련의 DDA 농업협상 진행 추이를 감안해 볼 때, 2004년 말까지 DDA가 타결될 가능성이 없어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린 쌀 협상은 DDA의 모델리티 없이 진행되게 되었다.

모델리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쌀 협상 진행은 곧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 폭(관세감축 및 TRQ 증량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쌀 협상을 진행하게 됨을 의미하는 바 쌀 협상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쌀 협상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쌀 협상의 법적 규범이라고 할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해석을 비롯하여 관련 양허수정협상의 절차규정 등 쌀 협상 관련 WTO의 규정을 검토하고, 협상참가국들의 전반적인 쌀 산업동향과 일본과 대만의 쌀 협상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쌀 협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쌀 협상에 따른 추가적인 쌀 시장의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세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확률적 접근에 의한 예상 수입량 분포를 분석하여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동등성 수준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의 최종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이번 쌀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최종 선택에 좋은 기초자료로 그 역할을 다했기를 바란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2004년 쌀 재협상은 UR 협상에서 얻었던 관세화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협상이다. 9개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에 관세화 시의 수입량을 예측하고 이를 협상 조건으로서의 잣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쌀을 관세화 할 경우 2014년 예상되는 쌀 수입량은 쌀의 국제가격, 환율, 관세감축 폭 및 TRQ 증량 폭에 따라 MMA 4.9~15.5% 상당량으로, 수입량 변동 폭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 때 평균 수입량은 MMA 6.3~6.4% 상당량이 되는데, 이 때 수입이 급증하여 이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은 50%이다.

이러한 수입급증의 위험을 낮출 경우 관세화시 예상되는 쌀 수입량은 MMA 7.1~7.5% 상당량으로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관세화와 관세화유예의 동등성 수준은 MMA 7.1~7.5% 수준도 될 수 있다.

8%의 관세화 유예를 끝까지 지속할 경우에는 8%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8% 관세화 유예는 사실상 평균적으로 MMA 6.5~6.6% 상당량과 같다. 따라서 수입급증의 위험을 줄인다면 MMA 8%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일단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후 DDA 결과를 보아가며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며, 선진국이 되면 관세화로 전환하는 실익이 크지 않아 유예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유예도중 관세화전환을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평균 쌀 수입량은 MMA 6.5~6.6% 상당량이 되어 2005년부터 관세화할 경우에 비해 매년 0.2%(약 1만톤)의 추가적 수입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후 DDA의 결과를 보아가며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는 한편 쌀 수입을 8% 이내에서 차단하는 것이, 비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수입급증의 우려가 있는 관세화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미국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관세화의 메시지를 기초로 우리의 기대수준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용수 부족으로 인해 수출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는 호주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사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먼저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기초로 우리의 요구 수준을 관철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쌀 수출여력에 한계가 있고 관세화가 중국의 이익에 항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통상협력 경험의 미흡을 이용하여 먼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도 동시에 취해야 한다.

태국, 인도는 장립종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수요 패턴과는 맞지 않으므로 수요 창출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며 요구수준을 낮출 수 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은 쌀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의무수입물량 보다는 기타 품목과의 연계 혹은 TRQ 관리문제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쌀 협상의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협상에 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BSTRACT

Strategy Suggestion for Korea in the WTO Rice Negotia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ssues related to the 2004 Rice Negotiation under the WTO and to propose efficient strategies for Korea in the upcoming negoti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URAA and associated WTO rules, including Article 28 of GATT, and tries to underst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Furthermore, current situations and prospects of the rice industry in major rice exporting countries, for example, China, the U.S., Thailand, and Australia, are examined, and their potential responses in the upcoming negotiation are predicted. Finally, the expected quantity of imported rice is simulated, based on econo-metric and probability approaches.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n expected quantity of imported rice in 2014 under the rice tariffication would be equivalent to 6.3~6.4% of MMA. However, the probability that actual imports exceed the expected amount is 50 percent. In order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such import surge, the increase of MMA(to 7.1~7.5%) can be a proper solution to strike a balance between rice tariffication and the current quota system. However, the delay of rice tariffication can be a good choice in Korea, since it is considered to switch from the current quota system to tariffication during the grace period of 10 years. In that case, an expected import quantity is estimated to be equivalent to 6.5~6.6% of MMA. Therefore, if Korean government want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import surge, it needs to stick to the current quota system and then gradually

switch to tariffication. Under this scenario, it has to pay additional cost equivalent to 0.2% of MMA (about 10,000 matric ton) each year. Meanwhile, the probability that a rice import exceeds 8% of MMA would never materialize.

Finally, the study emphasizes that Korea should utilize the option of tariffication properly in order to pay a minimum cost for maintaining the current quota system in the bilateral rice negotiations, particularly with the U.S.

Researchers: Jin-Kyo Suh, So-Yeong Lim, Sang-Hyun Kim, Song-Soo Lim, and Jae-Ok Lee.
E-mail Address: jksuh@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2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4. 연구의 한계 ····· 5

제2장 쌀 협상의 의미와 법적 성격 검토

1. 쌀 협상의 성격 ····· 6
2. 쌀 협상 관련 법 조항 ····· 10
3. DDA 농업협상과의 관계 ····· 14
4. 쌀 협상의 추진일정과 단계별 과제 ····· 15

제3장 세계 쌀 산업 현황

1. 세계 쌀 교역 및 수급 동향 ····· 21
2. 주요국의 쌀 산업 현황과 시사점 ····· 27

제4장 일본과 대만의 쌀 협상 경험과 시사점

1. 일본의 관세화 전환 과정과 내용 ····· 57
2. 대만의 관세화 전환 과정과 내용 ····· 63
3.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시사점 ····· 68

제5장 쌀 시장개방 시나리오 분석

1. 기본인식 ····· 70
2.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 74
3. 시나리오 설정 ····· 75

제6장 관세화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 분석 및 협상 전략

1. 관세화 시의 예상 수입량 ····· 86
2. 확률적 접근을 통한 동등성 분석 ····· 90
3. 협상 전략 ····· 99

제7장 요약 및 결론 ····· 110

참고 문헌 ····· 116

표 차 례

제3장

표 3- 1. 세계 국가별 쌀 수출입 추이, 1990-2004 ····· 22
표 3- 2. 주요 곡물의 교역 비중(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 23
표 3- 3. 생산지별, 형태별 생산량 ····· 27
표 3- 4. 형태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중 ····· 28
표 3- 5. 쌀 수급동향(유통연도 기준) ····· 29
표 3- 6. 용도별 쌀 소비 추이 ····· 30
표 3- 7. 세계 쌀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비중 ····· 31
표 3- 8. 미국의 주요 쌀 수출국 ····· 32
표 3- 9. 미국의 쌀 가격 추이 ····· 33
표 3-10. 쌀 국제가격 추이 ····· 33
표 3-11. 중국의 쌀 생산 추이 ····· 35
표 3-12. 동북지역의 벼 재배면적 변화 ····· 35
표 3-13. 동북지역 단립종 쌀의 생산량 변화 ····· 36
표 3-14. 중국의 국별 쌀 수출추이 ····· 38
표 3-15. 호주의 쌀 생산 추이 ····· 42
표 3-16. 호주의 주별 쌀 생산 ····· 42
표 3-17. 호주의 쌀 수출입 추이 ····· 43
표 3-18. 태국의 쌀 생산 추이(정곡기준) ····· 44
표 3-19. 시기별 태국의 쌀 수출 추이 ····· 46
표 3-20. 인도의 쌀 생산 ····· 48
표 3-21. 인도의 쌀 수출량 추이 ····· 49

표 3-22. 쌀 수출가격의 비교: 쇄미 5%, FOB 가격 ····· 51
표 3-23. 쌀 수급 동향 ····· 52
표 3-24. 쌀 수출 동향 ····· 53
표 3-25. 이집트의 쌀 수급 현황 ····· 54
표 3-26. 이집트의 쌀 수출 현황 ····· 55
표 3-27. 캐나다의 쌀 가공품 對韓 수출실적 ····· 56

제4장

표 4- 1. 일본의 C/S 수정안 주요 내용 ····· 59
표 4- 2. 일본의 관세상당치 산정근거 ····· 59
표 4- 3. 일본의 쌀 TRQ 수입 현황 ····· 62
표 4- 4. 대만의 이행계획서(CS) 수정안 내용 ····· 64
표 4- 5. 대만의 관세상당치 산정근거 ····· 65
표 4- 6. 대만의 WTO 가입 후 국가별 쌀 수입량, 2002-03년 ····· 67

제5장

표 5- 1.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특징 ····· 73
표 5- 2. SSG 발동 실적 ····· 82
표 5- 3. SSG 물량 발동기준 ····· 82

제6장

표 6- 1. 2009년 예상 쌀 수입량(TE 433% / TE 486%) ····· 86
표 6- 2. 2014년 예상 쌀 수입량(TE 433% / TE 486%) ····· 87
표 6- 3. 2009년 예상 쌀 수입량(2007년 개시 / 2008년 개시) ····· 87
표 6- 4. 2014년 예상 쌀 수입량(2007년 개시 / 2008년 개시) ····· 87
표 6- 5. 2009년 예상 쌀 수입량: TE 433% ····· 89
표 6- 6.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TE 433% ····· 89

표 6- 7. 2009년 예상 쌀 수입량: TE 486% ····· 89
표 6- 8.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TE 486% ····· 89
표 6- 9. 2009년 예상 수입량 확률 분포(TE: 433%, 평균 5.07) ···· 91
표 6-10. 2009년 예상 수입량 확률 분포 (TE: 486%, 평균 5.07) ···· 91
표 6-11. 환율 및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 변화 효과, 2009 ····· 92
표 6-12.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확률 분포(TE: 433%, 평균 6.29) ·· 93
표 6-13.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확률 분포(TE: 486%, 평균 6.28) ·· 93
표 6-14. 환율 변화가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 ····· 94
표 6-15. 개도국 확률 변동 시 수입량 변화 ····· 95
표 6-16. SSG 확률 변동 시 수입량 변화 ····· 96
표 6-17. 시나리오별 확률 부여 ····· 97
표 6-18. 시장 개방 폭 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동 ····· 98
표 6-19.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2014년 예상 수입량 ····· 101
표 6-20. 동등성 분석 결과 ····· 102
표 6-21. 일본 수입 쌀 시장에서 국별 시장 점유율(SBS의 경우) ···· 103
표 6-22. 중국의 단립종 쌀 수출현황, 2002 ····· 106

그 림 차 례

제3장

그림 3-1. 세계 쌀 수출시장의 쌀 형태별 점유율 ····· 23
그림 3-2. 세계 쌀의 재고량 및 재고비율 ····· 25
그림 3-3. 국제 쌀 가격 추이 ····· 26

제5장

그림 5-1. 국제 쌀 가격 장기전망: USDA, OECD ····· 84
그림 5-2. 국제 쌀 가격의 설정 ····· 85

제6장

그림 6-1. 시나리오별 예상 쌀 수입량 ····· 88
그림 6-2.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누적확률 분포(TE: 433%) ····· 94
그림 6-3. 미국과 중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비 비교 ····· 10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과 그 이후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도출까지의 일련의 DDA 농업협상 진행 추이를 감안해 볼 때, 2004년 말까지 DDA가 타결될 가능성은 없으며,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인 모델리티(modality)의 도출은 가장 빨라야 2005년 12월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1일 DDA 기본골격(framework)이 어렵게 도출되었으나, 관세 및 보조금 감축(철폐)에 관해서는 기본 원칙만 언급한 채, 핵심 쟁점인 구체적인 감축방식과 감축수치는 추후 협상으로 남겨 놓았다. 이에 따라 DDA 모델리티 도출은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홍콩)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진행속도와 함께 구체적인 핵심 쟁점에 있어서 EU와 미국의 견해 차이 및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의견 대립이 쉽게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2005년까지의 모델리티 도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델리티 없는 쌀 협상의 진행은 곧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

대 폭(관세감축 및 TRQ 증량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쌀 협상을 진행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쌀 협상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동등성 분석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의 불확실성 아래서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추가 개방으로 관세화를 유예하고자 하는 반면 이해당사국들은 자국의 수출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최대한 시장접근을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쌀 협상에서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 도달이 상대적으로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국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형세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하여 쌀 협상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하의 다양한 시장개방의 상황 전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협상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쌀 협상에 따른 추가적인 쌀 시장의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화유예와 관세화간의 동등성 분석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쌀 협상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 분석 및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간의 동등성 분석을 기초로 쌀 협상의 전략을 수립하여 협상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간의 동등성 분석을 통하여 쌀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따라 시작된 쌀 협상의 기본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WTO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쌀 협상의 절차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계 쌀 교역 현황 및 협상 상대국의 쌀 산업 현황을 검토하여 협상 상대국의 요구수준을 사전에 예상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였으며 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간의 동등성 분석을 위해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수입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DDA 농업협상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량모형을 통해 예상 쌀 수입량을 전망해 보았다. 이 결과는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MMA 수준을 결정하는데 잣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산출된 예상 수입량만으로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간의 선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였으므로 확률적 접근 방식을 통해 동등성 분석을 하였다.

결국 모형을 통해 도출된 예상 수입량은 확률이라는 도구를 거쳐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간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며 협상 상대국이 요구하는 MMA 물량을 수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제시되었다.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에서 쌀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쌀 협상에 관한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대부분은 가상적인 관세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국내 파급영

향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수입물량의 수준을 검토하여 관세화 유예시 추가적인 시장접근물량의 상한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환 등(1999), “한국 쌀 농업의 선택: 관세화인가? MMA인가?”와 한두봉 등(1999), “쌀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및 한두봉(1999b),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시장개방」은 지난 UR당시 관세감축률에 기초하여 관세화와 관세화유예를 비교·분석한 연구로 본 연구의 방향 설정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4년 쌀 협상과 관련된 성격 규명과 DDA의 관계, 그리고 협상에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분석이 없으며, 3년 전에 연구되어 설정된 시나리오도 최근 DDA 농업협상의 동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환율과 쌀의 국제시장가격 등 쌀의 관세상당치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다.

임정빈 등(2000), 「WTO 뉴라운드 대응 공동연구: 농업 분야 영향분석」은 개별 농산물의 수급탄성치를 이용하여 생산자 잉여감소를 계측하고 있으나, 농산물 상호간 생산대체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재옥 등(2003), 「WTO 쌀 재협상의 시나리오별 영향분석과 대응 방안」, 서진교 등(2003),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 분야 주요 쟁점별 영향분석」, 서진교(2003), “관세화에 의한 쌀 시장개방의 파급 영향과 함축성”등은 쌀의 관세화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영향을 계측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환율과 쌀의 국제시장가격 등 쌀의 관세상당치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쌀 협상 파급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최근의 쌀 협상의 특성과 동향을 감안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쌀 협상 자체의 성격 규명 및 협상에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4.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쌀의 관세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기초로 하여 관세화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물량 상당치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DDA의 부진으로 쌀을 관세화 할 경우 예상되는 시장개방 폭에 대하여 많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쌀 시장 개방 폭에 대하여 많은 가정을 하였다.

설정된 가정에 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거듭된 검토를 통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DDA 및 다양한 불확실한 변수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연구 결과는 자체의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 2 장

쌀 협상의 의미와 법적 성격 검토

1. 쌀 협상의 성격

1.1. 관세화유예의 연장을 위한 협상

쌀 협상의 주요 목적과 내용은 UR 농업협상의 결과 우리에게 허용되었던 쌀의 관세화유예 조치를 10년간의 이행기간 이후에도 계속 원용하기 위해 우리의 쌀 시장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추가적이고 이해할 만한 추가적 시장개방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다면 이행 당사국과 협상 없이 쌀의 관세(상당치)를 계산하여 WTO에 그 결과와 계산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쌀의 관세(상당치)가 정해진 계산지침에 따라 올바로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관세화에 따라 우리의 양허수정안이 바르게 고쳐졌는지에 대해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검증(certification)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는 관세화유예에 관한 협상과는 별개의 과정이다.

1.2. 관세화유예의 조건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이해 당사국들과 양자협상을 통해 관세화유예를 재연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수용 가능한 추가적 양보의 최소수준은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관세화를 선택했을 경우 우리의 쌀 시장이 개방되는 효과라고 해석된다.

환언하면 쌀이 매우 중요한 비교역적 관심품목이고 수입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관세화유예를 통해 쿼터제도를 운영할지라도 최소한 관세화에 의한 시장개방과 수입의무는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근거도 없이 최소의 양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해 당사국 역시 무리한 조건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관세화를 선택했을 경우 시장개방 파급영향 분석은 DDA의 부진으로 관세상당치의 수준, 관세의 감축 폭과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에 관한 조건을 둘러싸고 상대국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화유예를 위한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에는 쌀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농산물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농업협정 부속서 5(B)에서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관세화유예를 위해서는 그 밖의 품목에 대한 적절한 시장접근기회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appropriate market access opportunities in other products under the AoA). 이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시장개방의 효과가 특정 품목의 개방 수준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이해 당사국들도 만족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3. 쌀 협상의 불확실성

쌀 협상은 DDA 농업협상에서 세부 원칙(Modality)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관세감축 또는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폭, TRQ의 수입관리방식 등에 관한 참조기준이 없어 매우 불확실한 여건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잘못 예상하다가 비관적인 형태로 타결될 경우 관세화를 잘못 선택하여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반대로 DDA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을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관세화유예의 대가로 과도한 물량을 양보하여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쌀 협상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은 수출국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TRQ를 양보하고 상대국들은 이를 수용 내지 허락하는 입장이므로 DDA 농업협상 전망과 상관없이 과도한 TRQ 물량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쌀 협상에서의 우리 입지는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쌀 협상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DDA 농업협상의 타결 시나리오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대상국과 비교한 우리의 상대적인 정보의 양과 예측능력에 따라 우리의 상대적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협상 예측의 대상은 관세감축 폭과 방식,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폭,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방식 개선 등 DDA 농업협상의 세부 원칙과 더불어 우리의 개도국 지위의 계속적인 확보 가능성 등에 관한 것이다.

1.4. 협상대상국의 상이한 입장의 절충 문제

이번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상이한 입장의 이해당사국들과 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협

상대상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단일 협상안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의 쌀 협상이 일본과 대만의 쌀 협상과 비교하여 더욱 어려운 측면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쌀에 관한 양자협상에 주역으로 참여하게 된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쌀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호주는 시장개방 폭의 절대수준보다 수출 가능성과 안정성 제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세화보다 관세화유예를 인정하는 대신 수입보장을 선호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과 태국은 어떠한 방식이든 수출 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관세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TRQ 물량을 크게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관세화할 경우 스스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타 국가(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에는 우리가 실질 협상 대상국이 보기 어려운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디카 쌀, 특수미, 쌀 이외의 품목 등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국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WTO는 양허수정에 관한 협상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에 따라 종료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주요 협상대상국(최초협상국, 주요공급국, 실질관심국 등) 중심의 양허수정 협상을 권고하고 있다(GATT 28조). 따라서 우리의 쌀 협상은 일단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 협상에 주력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되 나머지 국가들과는 개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협상 타결의 순서로는 미국/중국과 먼저 합의하고, 이 합의안를 기초로 삼아 호주/태국과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과거의 수입실적을 바탕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요 협상 대상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과 먼저 합의를 이룬다면 호주 및 태국 등 기타국과의 협상에서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기타 국가와의 협상은 국내 수요의 한계 내에서 또는 전체 TRQ의 한도 내에서 가공용 쌀, 쌀 가공품, 특수미 등에 대한 시장개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대상국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료용 보리, 콩깻묵 등 농업원자재 성격의 축산사료에 대한 수입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쌀 협상 관련 법 조항

2.1. 농업협정문 부속서 5

2.1.1. 주요 내용

부속서 5는 A 부문(Section A)과 B 부문(Section B)으로 나뉘며, 전자는 선진국(일본과 대만), 후자는 개도국(우리나라, 이스라엘, 필리핀)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A 부문은 1~6항이고 B 부문은 7~10항인데, 1항의 (a)~(d)는 지정된 농산물에 대한 공통 기준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지정된 농산물의 수입은 기준 연도(1986-88년)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이어야 한다.

(b) 기준 연도 이후 지정된 농산물에 수출보조가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c) 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d) 식량안보와 환경보전과 같은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s)를 반영한 특별조치의 대상으로서 지정된 농산물에 대해 회원국 이행 계획서(CS)의 Part I Section I-B(관세할당) 부문에 “ST-Annex 5”로 명기하도록 한다.

A 부문의 나머지 규정들은 최소 시장접근(MMA) 또는 쿼터 물량의 증량 폭(1항 (e)), 특별조치 중단 이후의 쿼터 증량 폭(2항), 이행기간 이후 특별조치의 연장에 관한 협상(3항), 특별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양허(4항), 이행기간 이후 특별조치 중단에 따른 쿼터 유지(5항), 특별조치에서 관세화 전환의 요건(6항) 등이다.[1]

B 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항: (a) 이행 첫해부터 5년째까지 기준연도 소비량의 1%에서 2%까지 수입량(MMA)을 균등하게 늘리고, 6년째부터 이행연도 마지막 해인 10년째까지 기준연도 소비량의 2%에서 4%까지 균등하게 확대한다.

(b) 농업협정 아래 다른 품목에 대해 적절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8항: 특별우대 조치의 지속문제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이행 10년째에 시작해서 끝내야 한다(shall be initiated and completed).

9항: 협상의 결과로 특별우대 조치를 계속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협상에서 결정된 대로 (상대국에)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를 제공해야 한다.

10항: 특별우대 조치를 지속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부속서 5의 첨부문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한 관세상당치를 바탕으로 관세를 설정해 적용한다.

2.1.2. 부속서 5의 해석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Section A와 Section B의 규정 간에 특징적

---

[1] A 부문은 선진국 조항이고, 이 조항을 근거로 특별조치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이미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함.

으로 차별화되는 내용은 관세화 재유예 여부에 관한 협상은 선진국이 적용할 Section A에서는 농업협정문 제20조(개혁과정의 계속)에 근거한 협상의 일부로서 추진될 것이라고 명시한 반면 개도국이 적용할 Section B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UR 농업협상의 결과가 미흡함을 인정하여 농업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을 선진국에게 더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UR 농업협상에서 관세화 예외조치를 부여받은 우리나라는 10년간의 이행기간 종료 이후 2005년부터 관세화유예를 계속 적용할 지의 여부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2004년에 시작하여 종료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농업협정문 부속서 5(B); Any negotiation..... shall be initiated and completed within the time-frame of the tenth year itself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주요국과의 양자협상에서 합의한 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이의제기와 해소 과정(Certification; GATT 28조에 관한 1980년 3월 결정문에 따를 경우 최소 3개월 소요)이 위에서의 '어떠한 협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1)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2)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포함된다고 볼 경우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의 경우에는 9월 30일 이내에 협상을 타결시켜야 하며, 관세화의 경우에는 관세화안을 9월 30일 이전에 WTO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주요국과의 양허협상 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이 부속서의 '어떠한 협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협상의 시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2.2. GATT 28조

WTO의 기본정신은 회원국 간에 약속한 양허는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절차와 원칙하에 양허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GATT 28조는 본 조항과 GATT 28조의 해석을 위한 주석, 양허수정 절차와 협상에 관한 1980년 3월과 11월 결정문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GATT 28조 본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협상대상국과의 협상과 합의, 협의를 조건으로 양허수정 가능

2항: 협상과 합의의 일반 원칙으로 이전의 양허수준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혜적인 양허의 일반 수준을 유지해야 함.

3항: 합의실패 시 협상 신청국의 행위 및 협상 상대국의 대응조치

4항: 특별 상항에서 협상개시와 합의 절차

5항: 양허표 수정과 철회의 권리 유보 및 대응 유보

한편 GATT 28조 규정은 주요국과의 합의도출 이후 공동으로 서명한 후 최종보고서를 WTO에 통보할 경우 실질적인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1980년 11월 결정문 5, 6항), 효력발생은 합의된 양허안을 통보한 날짜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1980년 11월 결정문 7항). 일본이 관세화를 선택했을 때도 효력발생 3개월 전에 관세화안을 WTO에 통보했으나, 검증작업의 완료는 효력발생 시한인 1999년 4월 1일을 넘겨 2001년에 가서나 이루어졌다. 따라서 양자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양자협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단순한 검증작업(Certification)은 실질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본은 양허표(Schedule)가 확정되어야만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SSG 등 보완조치를 원용할 있다고 판단하여 효력발생 3개월 전에 관세화안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3. DDA 농업협상과의 관계

2004년 쌀 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이미 합의되었고, WTO 설립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쌀 협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협상이고, 상이한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쌀 협상은 WTO 체제하에서의 협상이지만 우리나라 쌀 시장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협상이므로 다자간 협상에 해당하는 DDA 농업협상과는 성격이 상이하다.

DDA 농업협상은 외형적으로는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DDA 협상(일명 뉴라운드)의 일부로 진행되는 협상이며, UR 농업협상의 후속 협상으로서 농업협정문 제20조에 의해 농업개혁이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상이다.

따라서 만약 DDA 농업협상이 2003년 3월 농업위원회에서, 또는 칸쿤 각료회의에서 모델리티에 대해 회원국 간에 합의를 도출하였다면 후속 협상의 과정은 이행계획서의 제출과 이에 대한 양자협상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이므로 합의된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는 UR 농업협상의 모델리티에 해당하는 '개혁안 하의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약속설정을 위한 양식(Modal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Binding Commitments under the Reform Programme)'을 대체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농업협정문의 상당한 내용도 DDA 농업협상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상당 부분 수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은 농업개혁을 이루기 위한 개혁의 방식과 속도에 관한 세부 원칙, 즉 모델리티를 아직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거나 개별국가의 개혁성과를 평가할 경우,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쌀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근거가 되는 규정은 농업협정문과 UR 농업협상의 모델리티가 될 것이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에서의 협상 분위기와 논의 내용은 UR 농업협상에서의 개혁 폭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쌀 협상에서 우리가 UR 농업협상 모델리티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만 DDA 농업협상은 쌀 협상과 연관성이 있고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에서 모델리티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쌀 협상은 관세화유예를 연장할 경우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 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쌀 협상의 추진일정과 단계별 과제

4.1. 협상개시 통보의 시점

양허의 수정, 철회를 원하는 국가는 양허수정의 효과가 개시되기 이전 3-6개월 사이에 그 취지와 협상개시 의사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28조 주석 규정 1-3항). 우리나라의 쌀 협상은 효력발생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협상개시 의사의 통보는 2004년 7월 1일-10월 1일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농업협정문 부속서 5(B)에는 특정한 협상개시 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2004년 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개시 의사 통보 및 협상의 시작과 관련하여 GATT 28조와 농업협정문 부속서 5(B)는 상호 모순되나, 쌀 협상의 특성과 농업협정문이 특수법인 점을 감안하면 2004년 중 어느 때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상통보를 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1월 20일 협상개시 의사를 WTO에 통보하였다.

4.2. 양허수정안의 제시

양허수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할 때에는 1) 양허수정의 취지, 2) 해당 품목의 관세번호와 해당 세번별 최초협상국(할 수 있을 경우), 3) 최근 3개년간 수입통계(관세의 형태가 영향을 받을 경우, 이와 관련된 통계) 등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양허를 수정할 경우 수정안은 통보내용에 기술되어 있거나, 혹은 통보 이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협상대상국으로 인정되는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1980년 11월 결정문 2항). 현재 1차적 협상목표는 관세화 유예이므로 이들 국가에 보내야 하는 양허수정안의 내용에는 유예연장을 위해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의 내용과 TRQ의 수입관리방식에 관한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3. 협상대상국의 결정

양허수정에 관한 협상개시를 통보, 신청할 경우 WTO는 협상에 참가할 협상대상국을 제출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삼아 결정하게 된다. 우리 쌀 협상의 경우 최초협상국으로서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과거 3년간 주요공급국으로서 중국, 실질 관심국(차별적인 수량제한 조치가 없었을 경우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을 국가; GATT 28조 해석을 위한 주석, 7항)으로서 호주, 태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회원국이 한국의 쌀 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이나 실질 관심국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협상개시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

를 제기해야 하며, 협상신청국이 이를 인정할 경우 협상대상국에 포함시키고, 협상대상국이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WTO에 의뢰해야 한다(1980년 11월 결정문 4항). 따라서 협상대상국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협상개시 통보 이후 3개월이 초과될 수 있으나, 사실상 1-2개월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4. 협상 개시와 타결

협상신청국이 양허수정 협상의사를 통보한 이후 WTO는 첨부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삼아 협상대상국을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협상개시를 공식 인정(authorization)해야 한다(GATT 28조 해석을 위한 주석 4-1항). 따라서 협상개시 의사 통보 이후 빠르면 30일(2월 20일) 이내에, 늦으면 모든 협상대상국이 결정되는 3개월(4월 20일) 이내에 제안서를 준비, 제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단일 품목에 대한 양허수정 협상은 대개의 경우 60일 이내에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8조 해석을 위한 주석 4-3항).

4.5. 협상 타결안의 WTO 통보와 효력발생

관세화 유예협상은 협상대상국과의 모든 양자협상이 종료된 후 합의된 양허수정안에 공동으로 서명하여 WTO에 통보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시킬 수 있다(1980년 11월 결정문 7항; Contracting parties will be free to give effect to the changes agreed upon....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clusion of all the negotiations have been notified).

4.6. 합의된 양허수정안의 검증(Certification)

합의된 양허수정안이 양허계획(Schedule)으로 공식 확정되기 위해

서는 WTO 차원의 검증기간이 최소한 3개월 소요된다(1980년 3월 결정문). 양허수정안이 사무총장에 의해 배포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어느 한 회원국의 반대도 제기되지 않아야 양허안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양허안에 대한 반대는 양허수정 합의안의 부적절한 반영과 합의안의 범위이탈 여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4.7. 협상의 기간 및 협상 추진방식

쌀 협상에서 협상의 추진 방식과 절차와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GATT 양허수정에 관한 규정(GATT 28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허수정에 관한 타결안의 효력발생은 타결안에 대한 검증기간과 절차와는 관계없이 실질 협상대상국과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WTO에 통보한 시점부터 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든 관세화든 검증과정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협상절차와 국내 관련 규정의 개정까지 완료한다는 차원에서 양자협상의 시한을 9월 30일로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조치의 선례에서도 검증기간과 절차는 나중까지 상당한 시일에 거쳐 진행되었음을 볼 때 협상 시한을 9월 30일까지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에 관해 일부에서는 2001년에 출범한 도하 무역 라운드(DDA)가 2005년 1월 1일로 위임한 협상 타결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2005년 12월에 열리는 제6차 홍콩 각료회의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게 된 점을 들어, 쌀 협상의 시한도 DDA 농업협상이 끝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농업협정 20조에 의해 2000년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이 2001년부터는 도하 라운드에 통합되면서 일괄 타결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농업협정의 일부분인 부속서 5에 따라 2004년부터 시작된 쌀 협상도 농업협상과 연계시

켜 추진하면 된다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쌀 협상과 농업협상은 같은 농업협정에 근거할지라도 독립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농업협정 20조는 농업협상의 시작 시점(2000년)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부속서 5는 쌀 협상의 시작과 종료 시점(2004년)을 모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협상의 경우 각료회의나 일반 이사회가 협상 진척 수준을 봐가면서 그 종료 시점을 정하지만, 협상 종료 시점이 이미 명시된 쌀 협상의 경우 협상 시한에 관한 새로운 위임사항이 필요하지 않다.[2]

또한 농업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 2003년에 농업협정 13조 평화조항의 적용이 종료된 사례는 농업협상이 연장된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정해진 특별조치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3] 농업협상 과정에서 평화조항의 연장을 요구하는 일부 회원국들의 제안이 있었지만,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2003년을 넘기고 말았고 이에 따라 평화조항은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teinberg and Josling 2003; Siuves 2004).

농업협정 부속서 5는 농업협상이 2000년부터 시작돼 2004년 전까지 끝나게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쌀 협상이 농업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에 끝날 것을 의도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의도에 대한 해석은 농업협정 문안 자체의 해석보다 우선되지 않고 다

---

[2] WTO 일반 이사회는 2004년 8월 1일에 세부원칙(modalities) 협상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하고, 도하 각료 선언문의 para. 45가 제시한 협상 종료 시한인 2005년 1월 1일을 제6차 홍콩 각료회의가 열리는 2005년 12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음. 물론 이 기본골격 안에는 쌀 협상이나 그 시한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평화조항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감축이 농업협정의 요건에 맞게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돼 있는 경우 GATT의 보조금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만 보조적인 의미를 가진다.[4] 따라서 설혹 농업협상과 쌀 협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의도됐다 하더라도 농업협정에 따라 동시대적인 사건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

[4]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의 31조는 조약의 용어에 주어진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신실(in good faith)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고, 32조는 조약 체결의 준비작업이나 결론의 여건 등은 '해석의 보조적인 의미(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으로 받아들일 것을 밝히고 있음 (http://www.fact-index.com/v/vi/vienna_convention_on_the_law_of_treaties.html).

제 3 장

세계 쌀 산업 현황

1. 세계 쌀 교역 및 수급 동향

2000년 이후 쌀의 세계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평균 2,500만 톤(정곡기준) 수준으로 1990년 1,200만 톤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표 3-1>.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은 태국으로 연간 평균 7백만~8백만 톤을 수출하여 세계 전체 수출의 약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도와 베트남 순이다. 이들 두 국가는 각각 350만 톤을 수출하여 세계 전체에서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교역되는 쌀의 대부분(75%)은 태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되는 장립종 또는 인디카 계열의 쌀이며, 이러한 쌀은 주로 동일 아시아권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및 중동 일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하는 자포니카 계열 쌀의 교역비중은 쌀 전체 교역량의 10% 정도로 주로 중국 동북부와 미국, 호주 등에서 생산되어 한국, 일본, 대만, 중동 일부로 수출되고 있다.

표 3-1. 세계 국가별 쌀 수출입 추이, 1990-2004

단위: 천 톤(정곡 기준)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수출						
태국	3,938	5,891	6,549	7,521	7,245	7,250
베트남	1,670	2,315	3,370	3,528	3,245	4,000
미국	2,420	2,993	2,847	2,541	3,295	3,800
중국	326	32	2,951	1,847	1,963	2,500
인도	505	4,179	1,449	1,936	6,650	4,200
파키스탄	904	1,592	2,026	2,417	1,603	1,700
아르헨티나	97	327	332	363	233	100
호주	470	519	617	618	360	175
버마	186	645	159	670	1,002	450
이집트	85	160	500	705	473	650
EU	271	323	308	264	358	475
우루과이	288	451	642	806	526	700
세계 전체	11,705	20,800	22,846	24,442	27,883	27,191
수입						
인도네시아	77	3,011	1,500	1,500	3,500	3,000
이란	1,102	1,583	1,100	765	964	900
이라크	388	96	1,274	959	1,178	800
나이지리아	224	450	1,250	1,906	1,822	1,250
사우디	547	638	992	1,053	938	1,100
EU	500	762	852	923	959	900
세네갈	332	406	589	874	858	750
브라질	493	987	700	673	548	1,100
일본	11	29	656	680	616	650
남아공	295	448	523	572	800	750
필리핀	538	277	900	1,175	1,250	1,300
러시아	100	129	400	247	406	400
세계 전체	11,705	20,800	22,846	24,442	27,883	27,191

자료: World Grain Situation and Outlook and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USDA.

그림 3-1. 세계 쌀 수출시장의 쌀 형태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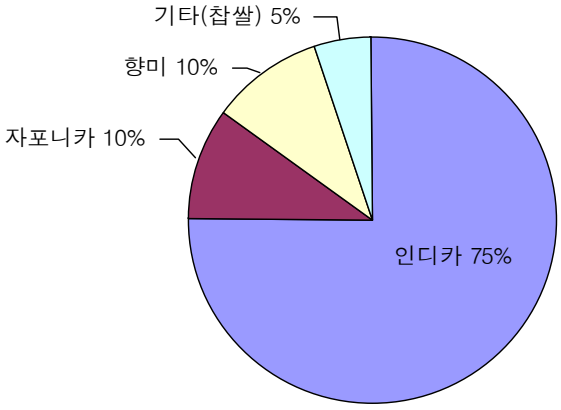

자료: Paggi and Yamazaki(2001).

인디카 계열의 향미도 세계 쌀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태국에서 수출하고 있으며(자스민 쌀) 주요 수입국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다.

표 3-2. 주요 곡물의 교역 비중(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단위: %

연도	밀	쌀	옥수수	보리
1970/71	18.4	4.0	12.0	9.5
1980/81	20.7	4.6	19.6	8.2
1990/91	17.7	3.5	12.1	11.4
2000/01	17.7	6.1	13.1	13.2
2001/02	18.6	7.0	12.7	12.3
2002/03	19.0	7.2	12.8	12.5
2003/04	19.1	6.5	12.4	11.1

자료: USDA. FAS.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Online. <http://www.fas.usda.gov/psd/psdselection.asp>.

한편 세계 쌀 생산은 몬순 기후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세계 총 생산량의 90% 정도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며 동시에 아시아에서 주식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교역비중(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이 매우 엷은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세계 쌀 교역량 비중은 1970/71년 4.0%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0년 이후 6.5~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옥수수 12%, 보리 11%, 밀 19% 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쌀 수출국은 태국, 베트남, 미국, 파키스탄, 중국 등 몇 개 국가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쌀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가가 상당량의 쌀을 수입하고 있어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의 특징이 있다.

장립종의 경우 태국과 베트남의 복점(duopoly) 내지 태국, 베트남, 미국간의 3자 독점(trigopoly)으로 볼 수 있으며, 중·단립종의 경우 미국, 중국의 복점 혹은 미국, 중국, 호주의 3자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들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선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쌀 소비의 증가 및 주요 생산국의 생산 감소로 세계 쌀 재고가 급격히 줄어 2003/04년 말 재고는 지난 20년 이래 가장 낮은 8천 5백만 톤에 재고율 20.6%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중·단립종 쌀의 경우 2003년 중국에서의 홍수와 한발, 수확기 일조량 부족 등으로 2002년 대비 5%가 감소했으며, 미국에서는 여름철 폭서에 의해 쌀 생산 2002년 대비 3.4% 감소했고 호주 역시 한발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70% 이상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후반기 이후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장립종의 경우 2001년 12월 태국의 정부매입을 계기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2년 이후 180~190달러/톤 수준에서 2003년부터는 190~200달

그림 3-2. 세계 쌀의 재고량 및 재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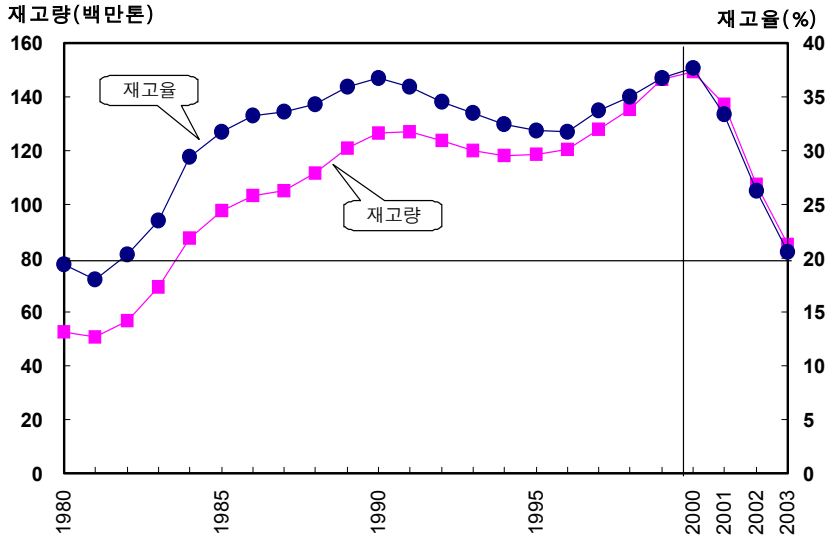

러/톤으로, 그리고 2004년 1월에는 210달러/톤 까지 상승하였다.

중립종은 2001년 10월부터 2003년 5월까지 300달러/톤 전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6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4년 1월에는 521달러/톤까지 상승하다 최근 490달러/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2003/04년 세계 쌀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증가폭은 크지 않으며, 전반적인 재고수준이 낮아 국제 쌀 가격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센터(USDA/ERS)나 FAPRI에서는 2013년까지 세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할 때 향후 국제 쌀 가격은 2003년 후반기 이후 급등한 수준에서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2002/03년 수준과 대비해서는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3-3. 국제 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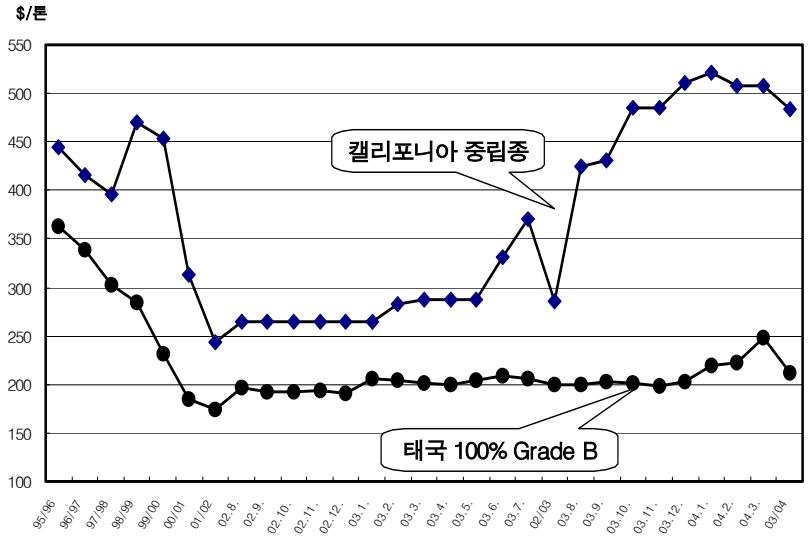

이러한 국제 쌀 가격의 중장기 상승 전망은 높은 관세에 의한 국내 쌀 시장의 국경보호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세화에 의한 시장개방의 유리성이 이전 보다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단립종의 주요 수출국가인 미국과 중국, 호주의 생산 감소로 재고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생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앞으로 2-3년 간은 이들 국가의 수출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쌀 협상에서 관세화유예 연장의 대가로 이들 국가가 요구할 의무수입량 수준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한편 세계적인 쌀 재고량 수준이 지난 20년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내 식량안보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쌀 생산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주요국의 쌀 산업 현황과 시사점

2.1. 미국

2.1.1. 쌀 산업의 현황과 특징

가. 개황

쌀이 전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정도에 불과하며, 동시에 생산액 측면에서도 옥수수, 대두, 건초, 밀, 면화, 담배,

표 3-3. 생산지별, 형태별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장립종	5,522	5,154	5,647	6,320	6,888	5,840	7,600	7,132
아칸소	2,777	2,497	2,957	3,340	3,602	3,106	4,226	3,908
캘리포니아	27	16	31	24	15	29	45	20
루이지애나	954	1,029	1,122	1,212	1,318	1,048	1,342	1,310
미시시피	705	566	626	705	828	583	757	734
미주리	269	234	276	330	446	434	561	499
텍사스	789	811	634	707	679	639	668	660
중립종	2,324	2,581	2,590	1,969	2,292	2,699	2,091	2,368
아칸소	530	761	631	562	704	794	436	478
캘리포니아	1,541	1,640	1,840	1,325	1,490	1,833	1,630	1,864
루이지애나	235	149	102	63	81	58	19	24
미주리	5	5	5	7	5	3	3	0
텍사스	18	26	12	11	13	12	3	3
단립종	41	48	64	78	164	118	73	69
아칸소	5	5	5	4	6	5	3	3
캘리포니아	35	43	59	74	159	113	70	66

주: 조곡기준 임.

자료: USDA. ERS(2002b, 2003).

감자에 이어 7위로, 쌀이 미국 농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쌀은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6개주에서 생산되며, 전체 쌀 생산에서 중·단립종 쌀의 비중은 25% 내외이다(캘리포니아가 전체 중·단립종 쌀 생산의 70% 점유).

표 3-4. 형태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중

연도	생산량 (천톤, %)		재배면적 (천ha, %)		단수 (톤/ha)	
	장립종	중·단립종	장립종	중·단립종	장립종	중·단립종
1995	5,521.6 (70.0)	2,365.1 (30.0)	935.7 (74.7)	316.1 (25.3)	5.9	7.5
1996	5,154.1 (66.2)	2,629.5 (33.8)	796.0 (70.1)	338.7 (29.9)	6.5	7.8
1997	5,646.5 (68.0)	2,653.8 (32.0)	934.4 (74.4)	321.3 (25.6)	6.0	8.3
1998	6,319.8 (75.5)	2,046.4 (24.5)	1,039.3 (78.8)	278.8 (21.2)	6.1	7.3
1999	6,888.4 (73.7)	2,456.8 (26.3)	1,100.0 (77.4)	321.3 (22.6)	6.3	7.6
2000	5,840.2 (67.5)	2,817.5 (32.5)	885.9 (72.0)	344.0 (28.0)	6.6	8.2
2001	7,600.1 (77.8)	2,164.3 (22.2)	1,091.5 (81.4)	249.7 (18.6)	7.0	8.7
2002	7,132.4 (74.5)	2,436.5 (25.5)	1,016.6 (78.3)	281.3 (21.7)	7.0	8.7
연평균 증감율	3.72	0.43	1.2	△1.65	2.5	2.1

주 1) 조곡기준 임.
2)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USDA. ERS(2002b, 2003).

표 3-5. 쌀 수급동향(유통연도 기준)

단위: 백만 톤(조곡기준), 달러/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공급량	9.7	9.4	10.0	10.1	10.8	10.4	11.7	12.0
이월재고	1.4	1.1	1.2	1.3	1.0	1.2	1.3	1.8
생산	7.9	7.8	8.3	8.4	9.3	8.7	9.8	9.6
수입	0.3	0.5	0.4	0.5	0.5	0.5	0.6	0.7
수요량	8.5	8.2	8.7	9.1	9.6	9.1	9.9	10.8
국내소비	4.7	4.6	4.7	5.2	5.5	5.3	5.6	5.1
수출	3.8	3.6	4.0	3.9	4.0	3.8	4.3	5.7
기말재고	1.1	1.2	1.3	1.0	1.2	1.3	1.8	1.2
시장가격	201.7	219.6	213.8	196.0	130.7	123.7	93.7	93.0
장립종								
공급량	6.5	6.0	6.6	7.4	7.9	6.9	8.5	8.8
이월재고	0.7	0.5	0.6	0.7	0.6	0.7	0.5	1.2
생산	5.5	5.2	5.6	6.3	6.9	5.8	7.6	7.1
수요량	6.0	5.4	6.0	6.7	7.2	6.4	7.3	8.1
국내소비	3.0	2.8	2.7	3.5	4.0	3.5	4.0	3.6
수출	3.0	2.6	3.3	3.2	3.2	3.0	3.3	4.5
기말재고	0.5	0.6	0.7	0.6	0.7	0.5	1.2	0.7
시장가격	206.6	233.7	224.9	193.8	125.7	128.8	90.4	-
중・단립종								
공급량	3.2	3.3	3.3	2.7	2.9	3.4	3.0	3.1
이월재고	0.7	0.6	0.6	0.6	0.3	0.5	0.7	0.5
생산	2.4	2.6	2.7	2.0	2.5	2.8	2.2	2.4
수요량	2.5	2.8	2.7	2.4	2.4	2.7	2.6	2.7
국내소비	1.7	1.8	2.0	1.7	1.6	1.9	1.6	1.6
수출	0.8	0.9	0.7	0.7	0.8	0.8	0.9	1.1
기말재고	0.6	0.6	0.6	0.3	0.5	0.7	0.5	0.4
시장가격	194.4	184.5	187.8	202.4	145.9	113.5	106.3	-

주 1) 국내소비량에는 감모, 손실, 오차 등을 포함함.
2) 시장가격은 가중평균 농가수취가격임.

자료: USDA. ERS(2002b, 2003).

2.1.2. 쌀 수급과 무역

가. 생산 및 소비

미국의 2002년도 쌀 생산량은 조곡 기준 957만 톤이고, WTO 출범 이후 재배면적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인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포니카 계통의 재배면적은 1995-2002년간 연평균 1.65%씩 감소했으나 단수는 1995-2002년간 연평균 2.1%씩 증가하여 2002년 8.7톤/ha에 이르고 있다.

1995-2002년 동안 장립종 국내소비량은 연평균 2.4% 정도로 증가한 반면, 중·단립종 국내소비량은 160~200만 톤 범위 내에서 연평균 1.3%씩 감소하였다. 미국의 쌀 소비 증가는 건강식품으로서의 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증가, 쌀을 소비하는 아시아와 히스패닉계 인구 증가, 다양한 쌀 가공식품의 개발 등에 기인하고 있다.

국내소비는 주로 식용, 가공용, 주정용으로 사용되며, 총 소비량에서 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7~63% 정도이다.

표 3-6. 용도별 쌀 소비 추이

단위: 천톤(정곡기준)

	식용소비	식용수입	가공식품	주정용	합계
1980	852.3	6.8	203.7	362.0	1,424.7
1990	1,268.7	156.9	552.5	498.9	2,481.1
1995	1,645.7	241.9	675.8	507.0	3,070.4
1996	1,622.9	334.3	641.1	502.8	3,101.2
1997	1,703.5	291.1	706.0	484.4	3,185.0
1998	1,728.4	336.6	732.4	502.3	3,299.5
1999	1,778.8	321.0	764.7	516.5	3,381.0
2000	1,682.7	344.6	826.9	526.9	3,381.2
2001	1,687.3	418.8	863.5	529.4	3,499.0

자료: USDA. ERS(2002b, 2003).

나. 수출입 동향

세계 쌀 수출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초 24%에서 2002년에 12%로 감소했지만, 태국 26%, 인도 24%에 이어 여전히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쌀 수출량은 WTO 출범 이후인 1995년에 269만 톤에서 2002년에는 393만 톤으로 매년 5.9%씩 크게 증가했으며, 이중 중·단립종의 비중은 20% 내외이다(2002년 110만톤).

주요 쌀 수출 대상국은 멕시코, 일본, 하이티, 캐나다, 브라질 등의 순으로 2000년대 들어 멕시코, 일본, 하이티에 대한 수출량이 급증하였다.

수출의 대부분은 장립종 쌀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단립종은 일본에 대한 수출로 1995년 19만 톤에서 2002년 3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미국의 세계 쌀 시장 점유율은 1996-2001년 평균 12%에서 향후 2011년 8%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USDA).

표 3-7. 세계 쌀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비중

단위: %

순위	1995		2000		2001		2002	
1	태국	28.3	태국	28.7	태국	30.8	태국	26.0
2	인도	20.1	베트남	14.8	베트남	14.4	인도	23.8
3	미국	14.4	중국	12.9	미국	10.4	미국	11.8
4	베트남	11.1	미국	12.5	파키스탄	9.9	베트남	11.6
5	파키스탄	7.7	파키스탄	8.9	인도	7.9	중국	7.0
6	기타	5.6	인도	6.3	중국	7.6	파키스탄	5.7
7	버마	3.1	기타	4.1	기타	4.3	버마	3.6
8	호주	2.5	우루과이	2.8	우루과이	3.3	기타	2.8
9	우루과이	2.2	호주	2.7	이집트	2.9	우루과이	1.9
10	아르헨티나	1.6	이집트	2.2	버마	2.7	이집트	1.7

자료: USDA. ERS(2002b, 2003).

2.1.3. 가격추이 및 국제 경쟁력

미국의 2002년도 쌀 농가판매가격은 조곡 100파운드당 3.7~4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4~11% 하락한 수준이다. 1998년 이후 농가판매가격은 정부의 최저지지가격인 융자가격(6.50달러/100파운드) 이하로 폭락했는데, 이는 쌀 공급량의 증가와 국제가격의 하락 때문이다.

미국의 자포니카 쌀 수출가격은 2002년에 정곡 톤당 287달러로 인디카 쌀의 수출가격인 톤당 212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2년 미국의 인디카 쌀 수출가격 212달러는 수출경쟁국인 태국의 199달러와 베트남의 182달러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3-8. 미국의 주요 쌀 수출국

단위: 천 톤(정곡기준)

순위	1995		2000		2001		2002	
	국별	수출량	국별	수출량	국별	수출량	국별	수출량
1	멕시코	262.0	멕시코	400.2	멕시코	471.9	멕시코	589.6
2	터키	220.6	일본	346.5	일본	359.2	일본	338.1
3	일본	193.0	캐나다	183.3	하이티	256.0	하이티	313.5
4	하이티	178.1	하이티	174.6	캐나다	175.8	브라질	233.3
5	캐나다	165.3	사우디	146.3	니카라과	133.6	터키	183.8
6	남아공	153.0	터키	138.0	터키	120.8	인도네시아	125.0
7	사우디	149.5	필리핀	104.7	혼도라스	115.3	니카라과	123.0
8	네덜란드	108.7	영국	103.0	사우디	114.5	가나	117.6
9	이란	85.8	가나	80.8	엘살바도르	109.1	영국	117.4
10	코스타리카	84.4	혼도라스	69.6	영국	94.4	코스타리카	115.5
	소계	1,600.3	소계	1,747.0	소계	1,950.7	소계	2,141.4
	총수출량	2,687.5	총수출량	2,624.7	총수출량	2,993.9	총수출량	3,926.8

자료: USDA. ERS(2002b, 2003).

표 3-9. 미국의 쌀 가격 추이

단위: 달러/100 파운드(조곡기준)

	농판가격	도매가격
1997	9.7	19.61
1998	8.89	18.05
1999	5.93	15.33
2000	5.61	14.92
2001	4.17	12.88
2002	3.7-4	11.39

자료: USDA. ERS(2002b, 2003).

표 3-10. 쌀 국제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정곡기준)

	미국(자포니카)	미국(인디카)	태국	베트남
1997/98	396	415	302	269
1998/99	470	369	284	257
1999/00	454	284	231	202
2000/01	313	272	184	165
2001/02	272	213	192	185
2002/03	287	212	199	182

주: 미국은 U.S. No. 2 가격 (자포니카는 캘리포니아, 인디카는 휴스톤), 태국은 방콕 100% grade B 가격, 베트남은 5% broken 가격임.
자료: USDA. ERS(2002b, 2003).

2.2. 중국

2.2.1. 쌀 산업 개황

중국은 세계 제1의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쌀 재배면적은 2001년 식량작물 총재배면적의 27%이었으며, 생산량은 1억 9,871만 톤으

로서 총 식량작물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자포니카 쌀은 주로 동북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양자강 유역에서도 일부 생산이 되고 있으며, 중국 전체 쌀 생산에서 차지하는 자포니카 쌀의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 양자강 지역의 자포니카 쌀 생산은 비교적 풍부한 농업용수로 인하여 생산 제약요인은 없으나, 일교차가 크지 않아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쌀 자급률은 남부지역에서는 하락하고 동북, 북부, 서북지역 등 북부지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와 같은 쌀 수급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은 중국의 농산물 유통과 운송수단의 하부시설 낙후에 따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단수는 1960년 133kg/10a에서 1990년 401kg/10a, 그리고 1999년 449kg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인디카 계통의 다수확 품종의 보급 확대 및 농약과 비료 투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중국 쌀은 미국 쌀에 비해 저품질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흑룡강성과 길림성에서는 일본, 스위스의 자본과 도정시설이 도입되어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성 정부도 녹색식품 기준에 적합한 쌀 생산과 유통에 노력하고 있다.

2.2.2. 쌀 수급과 수출입

가. 생산

중국의 품종별 쌀 생산을 보면 인디카 쌀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자포니카 쌀의 생산은 주로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1997년을 고비로 전체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쌀 생산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쌀 생산

표 3-11. 중국의 쌀 생산 추이

	재배면적 (만ha)	전체 식량 재배면적 중 비중(%)	총생산량 (만톤)	전체 식량 생산량 중 비중(%)	단수 (kg/ha)
1980	3,387.9	28.90	13,991	43.65	4,140
1985	3,207.0	29.46	16,857	44.46	5,250
1990	3,306.4	29.14	18,933	42.43	5,730
1995	3,074.4	27.93	18,523	39.70	6,025
1996	3,140.6	27.90	19,510	38.67	6,212
1997	3,176.5	28.13	20,074	40.62	6,319
1998	3,121.4	27.43	19,871	38.79	6,366
1999	3,128.4	27.65	19,849	39.04	6,345
2000	2,996.2	27.62	18,791	40.66	6,272
2001	2,881.2	27.16	17,758	39.23	6,163
2002	2,820.1	27.15	17,454	38.25	6,189
2003	2,708.0	-	16,580	38.50	6,123

자료:『中國統計年鑑』, 각 연도.

표 3-12. 동북지역의 벼 재배면적 변화

단위: 천ha

	흑룡강	길 림	요 녕	동북3성	전국	동북/전국
1990	673.5	418.4	543.3	1,635.2	33,064.5	4.95%
1995	835.1	429.6	472.6	1,737.3	30,744.1	5.65%
2000	1,605.9	584.8	489.7	2,680.4	29,961.7	8.94%
2001	1,567.0	689.9	515.5	2,772.4	28,812.4	9.62%
2002	1,564.4	666.1	556.4	2,786.9	28,201.6	9.88%
2003	1,257.0	506.8	397.8	2,161.6	27,080.0	7.98%

자료:『中國農村統計年鑑』, 각 연도, 中國統計出版社.

량은 1억 6,580만 톤 수준이었다.

자포니카 계열의 주산지인 동북 3성의 경우 과거 20년간 쌀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해 왔으나, 200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재배면적은 2003년 대비 22%가 감소해 216만ha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생산량도 감소하여 2003년 동북지역 쌀 생산량은 2002년 1억 6,972만 톤에서 2003년 1억 4,710만 톤으로 약 13.3%가 감소하였다. 2003년 동북지역의 쌀 생산이 대폭 감소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대두가 쌀을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2001년 이후 대두 가격의 상승과 함께 쌀의 과잉재고에 따른 쌀 가격 하락 등으로 기존의 벼 재배면적이 대두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향후 흑룡강성의 논 면적은 현재까지와는 달리 외연적으로 크게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이 여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있다고 하나 농업용수의 부족,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북성과 요령성에서는 이미 심각한 용수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북경 부근 지방에서는 용

표 3-13. 동북지역 단립종 쌀의 생산량 변화

단위: 만 톤

	흑룡강	길림	요녕	동북3성	전국	동북/전국
1985	162.9	184.1	263.0	610.0	16,856.9	3.62%
1990	314.4	289.4	369.2	973.0	18,933.2	5.14%
1995	469.9	296.9	261.8	1,028.6	18,522.6	5.55%
2000	1,042.2	374.8	377.1	1,794.1	18,790.8	9.55%
2001	1,016.3	371.2	355.2	1,742.7	17,758.0	9.81%
2002	921.0	370.0	406.2	1,697.2	17,453.9	9.72%
2003	843.0	308.0	320.0	1,471.0	16,580.0	8.89%

자료: 『中國農村統計年鑑』, 각 연도, 中國統計出版社.

수부족으로 인해 2005년 이후 쌀 생산을 금지하고 용수 사용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길림성에서는 다수확 생산 위주에서 품질 중심의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녹색식품 생산, 영농자금 지원,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의 쌀 관련 정책을 시행중이다.

나. 소비의 변화 전망

중국의 전체적인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포니카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자포니카 쌀 소비가 증가하는 주원인은 농촌지역의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고소득 도시지역 인구가 선호하는 자포니카 쌀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내륙유통의 기반시설이 개선되면서 남방지역에서도 북방지역에서 생산된 자포니카 쌀 소비가 가능해져 자포니카 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상품 브랜드가 중요해지고 동북지역 쌀이 고급 쌀이라는 인식과 함께 소비자가 즐겨 찾게 된 슈퍼마켓에서 주로 판매되어 자포니카 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포니카 쌀 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더 크게 증가하여 중국의 쌀 재고는 현재 2,000만 톤으로 늘어나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쌀 생산 감소로 재고가 크게 감소하였고, 가격이 급등하였다.

다. 수출추이와 전망

중국은 1980년대부터 쌀 생산이 매년 증가하여 수출도 증가해 왔으나, 1995년에는 150만 톤 내외를 수입하고 1996년부터는 다시 순수출국이 되는 등 수출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에는 국내생산의 증가와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시장의 경기회복에 따라 약 2백만 톤의 쌀을 수출하여 세계 제3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쌀은 종전에는 주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었으나 최근에는

코트디브아르, 쿠바, 이라크 등으로 수출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1999년 중국 쌀의 최대 수입국은 인도네시아로서 73만 톤을 수입하였고 러시아는 60만 톤을 수입하였다. 2000년 코트디브아르는 중국으로부터 87만 톤의 쌀을 수입하여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시장은 중국 총 수출의 3%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자포니카 쌀 수출은 동북지역의 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에서, 한국과 일본 등과의 합작투자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표 3-14. 중국의 국별 쌀 수출추이

단위: 천 톤

	1997	1998	1999	2000	4년 평균	점유율 (%)
수출						
필리핀	184.4	1374.7	180.6	64.4	451.0	17.5
인도네시아	9.8	1362.6	734.2	541.9	662.1	25.6
북한	91.8	77.9	86.3	52.7	77.2	3.0
한국	13.9	74.6	115.8	131.0	83.9	3.2
일본	36.3	81.2	75.6	66.4	64.9	2.5
이라크	124.0	98.7	102.9	169.5	123.8	4.8
콧트디브알	100.0	179.9	421.1	869.6	392.7	15.2
쿠바	84.6	145.4	226.9	225.5	170.6	6.6
기타	294.3	350.4	759.9	827.0	557.9	21.6
총계	939.3	3754.4	2703.2	2948.1	2584.0	100.0
수입						
태국	323.2	242.5	167.6	238.0	242.8	99.4
미국	1.2	0.5	0.6	0.4	0.7	0.3
미얀마	1.0	0.0	0.0	0.0	0.2	0.1
기타	0.8	0.8	0.1	0.2	0.4	0.2
총계	326.2	243.8	168.3	238.6	244.2	100.0

자료: 중국세관통계.

중국 단립종 쌀의 전통적인 수출시장은 일본, 한국, 북한과 쿠바이며, 최근 몇 년간 코트디부아르, 러시아, 일부 중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 등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단립종 쌀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러시아와 코트디부아르였고, 두 나라에 대한 수출량은 모두 20만톤이상 이었다.

한편 중국의 쌀 수출은 국영무역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중국양유수출입회사(中國糧油進出口公司)와 길림양유수출입회사(吉林糧油進出口公司)이다.

식량관리상 중국의 쌀 수출은 중국 정부의 엄격한 수출계획과 수량관리를 받아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허가한 국영기업만이 쌀 수출에 관한 대외무역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다. 특히 길림양유수출입회사의 수출대행권한은 동북3성과 자체경영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양유수출입회사는 주로 중앙정부의 쌀 전문비축과 각 주요 생산성(省)의 쌀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자체경영을 실시할 수 있다.

2.2.3. 가격추이와 국제경쟁력

중국의 쌀 생산비는 1995-2000년 톤당 80～90불 정도로서 미국의 1/3 미만 수준이어서 미국과의 가격경쟁에 앞서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중국이 일본 쌀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1995년 이후 2001년까지 7.9%에서 17.8%로 2배 정도 증가했으며, SBS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2%에서 78%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이 일본의 SBS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가격은 낮은 반면 품질이 계속하여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3. 호주

2.3.1. 쌀 산업의 현황과 특징

호주에서 쌀 산업의 중요성은 밀이나 사탕수수, 쇠고기, 양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호주는 농업부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출국이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로 낮다. 생산 및 수출 주요 농산물은 밀, 사탕수수, 쇠고기, 양모 등이며 2002년 기준으로 품목별 세계 수출시장의 점유율은 밀 15%, 양모 74%, 쇠고기 24%, 조당 10% 수준이다.

쌀 생산은 토양 염분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제한으로 획기적인 증대가 용이치 않다. 토양의 염분화로 인해 강수량에 따라 벼 재배에 필요한 농업용수가 할당되기 때문에 벼 재배면적은 이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쌀 생산은 뉴사우스웨일즈(NSW: New South Wales) 남부의 2천~2천5백 농가에 의해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이 호주 전체 쌀 생산의 99%를 담당하고 있다.

쌀의 생산에서 유통, 수출까지 생산자조직(RCL)과 마케팅보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재배에서 수확, 유통, 가공까지 쌀 생산자 협동회사(RCL: Ricegrowers' Cooperative Ltd)를 중심으로 쌀 마케팅이 수직 통합되어 있으며, SunRice라는 단일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다(SunRice가 호주 쌀 수출의 85%를 담당. 내수는 15% 정도).

2.3.2. 수급추이와 전망

가. 생산 여건

호주의 쌀 생산은 수자원 문제로 뉴사우스웨일즈 (NSW)주의 남쪽 지역인 머래이/머럼비지 계곡 관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호주 전

체 쌀 생산의 99%) 이 외에도 NSW와 인접한 빅토리아(Victoria)주와 퀸즈랜드(Quinsland)주의 일부 지역에서 쌀이 재배되고 있으나 1% 미만인 수준이다.

쌀 생산은 수자원 공급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호주 정부는 최근 들어 수자원 고갈과 관련된 관개용수의 공급과 토양 염분화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쌀 재배농법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1/02년 극심한 한발로 수자원 공급부족에 따라 2002/03년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75%, 70% 급감하였다.

나. 생산추이와 전망

호주의 벼 재배면적은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3~4%로 꾸준히 증가해 2000/01년에는 17만 7천ha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한발에 따른 용수부족으로 재배면적이 급감하였다. 2002/03년의 경우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75% 감소한 3만8천ha 수준으로 떨어졌다.

쌀 단수는 조곡기준으로 2002/03년 약 1톤/10a 수준이며, 쌀 생산량은 2002/03년 재배면적 급감에 따른 이상 영향을 제외하면 연간 약 130-140만 톤에 이르고 있다.

품종별 재배면적의 통계는 없으나, 생산통계에 따를 경우 장립종 생산은 전체의 18～24%로 나타나고 있으며, 드물게 일부 일본계 단립종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04년 벼 재배면적은 6만ha로 전망되며, 생산량은 58만 7천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소비변화

쌀 소비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13만 톤 안팎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쌀 소비는 정체 내지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15. 호주의 쌀 생산 추이

	재배면적(천ha)	단 수[1)] (톤/ha)	생산량[1)] (천톤)	식용소비량[2)] (천톤)
1960/61	18.7	6.1	114.3	17.2
1970/71	40.7	7.4	299.8	32.6
1980/81	103.9	7.3	759.8	43.0
1990/91	89.0	8.8	787.0	103.0
1995/96	149.7	6.4	951.2	118.2
2000/01	177.0	9.3	1,643.0	na
2001/02	150.0	8.5	1,275.0	na
2002/03	38.0	10.3	391.0	na

주 1) 조곡기준임.
2) 식용소비량은 가공을 제외한 것임.
자료: ABARE(2003).

표 3-16. 호주의 주별 쌀 생산

단위: 천 톤

생산량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호주 전체
	중립종	장립종	계	장립종	
1995-96	698	217	951	0	951
1996-97	1,077	256	1,381	0	1,388
1997-98	978	284	1,321	0	1,331
1998-99	978	286	1,382	0	1,390
1999-00	803	233	1,084	0	1,101
2000-01	1,291	375	1,625	0	1,643
2001-02	944	274	1,275	0	1,275
2002-03	348	43	391	0	391

자료: ABARE(2003).

2.3.3. 수출입추이와 전망

호주는 전 세계 70개국으로 쌀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산 급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재고유지로 65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파푸아뉴기니(수출점유 25%), 피지, 뉴질랜드, 홍콩 등 동남아시아 및 중동, 일본이며, 수출시장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호주 쌀은 2001년 처음으로 톤당 250달러에 수입된 이후 현재까지 수입실적이 없다.

표 3-17. 호주의 쌀 수출입 추이

	수 출		수 입	
	물량(천톤)	금액(만 호주달러)	물량(천톤)	금액(만호주달러)
1995/96	632	33,600	28	2,000
1996/97	520	29,100	36	2,600
1997/98	680	39,700	38	3,300
1998/99	582	38,800	39	3,400
1999/00	672	41,400	48	3,800
2000/01	602	38,300	50	4,400
2001/02	629	32,400	55	4,300
2002/03	658	12,300	61	4,600

자료: ABARE(2003).

2.4. 태국

2.4.1. 쌀 산업의 현황과 특징

쌀은 태국의 주식이자 가장 중요한 수출 농산물 가운데 하나이다. 태국은 기후에서 쌀 재배가 적절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쌀이 생산되고 있으며, 중앙 평원의 관개지역에서 벼 재배는 2~3기작도 가능한 실정이다.

천수답 지역의 쌀 농가는 5-8개월 정도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건기에는 농외소득을 얻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태국의 전체 쌀 생산에서 찹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인데 찹쌀의 주산지는 태국의 북동지역과 북부지역이다. 대부분의 농가는 주로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찹쌀을 재배하고 있다.

표 3-18. 태국의 쌀 생산 추이(정곡기준)

	재배면적 (천ha)	단수 (kg/ha)	생산량(A) (천톤)	소비 (천톤)	수출량(B)		기말재고 (천톤)
					(천톤)	(B/A)	
1960/61	5,643	1,112	6,275	4,699	1,576	25%	594
1970/71	6,854	1,307	8,956	7,669	1,576	18%	1,232
1980/81	9,200	1,246	11,463	7,955	3,049	27%	1,980
1990/91	8,792	1,291	11,347	8,400	3,988	35%	941
1995/96	9,032	1,593	14,388	8,443	5,281	37%	850
2000/01	9,891	1,724	17,057	9,348	7,521	44%	1,899
2001/02	10,125	1,728	17,499	9,767	7,245	41%	2,401
2002/03	10,158	1,693	17,198	9,922	7,552	44%	2,125
2003/04	10,636	1,664	17,700	10,200	8,750	49%	875

자료: USDA. FAS.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Online. <http://www.fas.usda.gov/psd/psdselection.asp>.

2.4.2. 수급추이 및 전망

가. 생산

쌀의 주산지는 태국의 중앙, 북동, 북부, 남부지역 등이며, 중앙지역은 토양이 비옥하고 수자원이 풍부하고, 관개시설이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영농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태국에서 최대 쌀 주산지다.

지난 40년간 태국의 쌀 생산량은 정곡기준으로 630만 톤 수준에서 2004년 1,800만톤 수준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쌀 재배면적은 664만 ha에서 약 1,000만 ha로 약 63% 증가하여 결국 쌀 단수는 ha당 1.1톤에서 1.7톤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쌀 단수의 증가는 주로 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증대, 최신 투입재의 사용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나. 소비

쌀 소비량은 정곡 기준으로 1960/61년 470만 톤 수준에서 2003/04년 1,000만 톤으로 증가해 왔으며, 국내 소비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70% 정도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정곡 기준으로 109㎏이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다.

2.4.3. 수출입 추이와 전망

태국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2004년에 88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 현재 세계 쌀 수출량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2위인 베트남과 인도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50-64년

에 평균 23%, 1965-81년에 19%, 1985-98년에 31%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50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태국의 쌀 수출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40% 정도였으나,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여 2003/04년에는 거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태국의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태국 바트(baht)화가 평가 절하되고 국내 쌀 정책이 상업주의 중심으로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었던 수출세를 없앰으로써 국내 가격과 세계 가격을 연동시켰고, 이로써 국내 가격은 올랐지만 수출이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3-19. 시기별 태국의 쌀 수출 추이

단위: 백만 톤(정곡 기준)

1950-64년		1965-81년		1985-98년	
미얀마	1.52	미국	2.03	태국	5.12
태국	1.38	태국	1.75	미국	2.55
미국	0.80	중국	1.62	베트남	1.60
중국	0.69	미얀마	0.59	인도	1.42
캄보디아	0.47	파키스탄	0.58	파키스탄	1.29
이집트	0.22	이탈리아	0.34	중국	1.10
세계 전체	6.05	세계 전체	9.23	세계 전체	16.72

자료: Dawe(2002).

2.5. 인도

2.5.1. 쌀 산업의 현황과 특징

인도는 세계 제2위의 쌀 생산국이자 주요 수출국이다. 쌀은 주로 5-10월의 재배기간에 따라 가을에 수확(Kharif)하지만, 남부지방의 경우 이모작으로 11-4월의 재배로 여름에 수확(rabi)되기도 하며 인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의 품종 수는 4,000개 이상이다.

주식이 쌀이므로 쌀에 대한 정책은 식량안보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증대, 배분, 수출에 정부의 개입이 큰 편이다. 인도는 생산 증대를 위해 최소보조가격(minimum support price: MSP) 조치를 운용하고 있다. MSP는 녹색혁명의 근간 조치로, 파종기에 발표함으로써 농민이 보장된 가격을 알고 영농할 수 있도록 한다(MSP는 쌀, 밀, 잡곡 등에 적용됨).

가. 쌀 수급 현황

쌀 생산량은 1980년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배면적은 1980년에 4,015만 ha에서 2003년에 4,400만 ha로 늘어났고, 생산량도 5,363만 톤에서 8,800만 톤으로 증대되었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향미(basmati)는 주로 하리아나(Haryana)와 펀잡(Punjab) 중에서 생산되며, 2003년 가격이 높아 2004년 생산량은 1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USDA에 따르면 2003/04년에 인도의 쌀 생산량은 정곡 기준으로 전년 수준보다 18% 늘어난 8,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ERS 2003). 인도 정부도 2011/12년까지 쌀 생산량을 1,290만 톤(연 3.7% 성장률)으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Nigam 2004). 이를 위해 단수가 ha당 11~13톤에 이르는 품종을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간척지가 쌀 재배면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1981-2001년에 1인당 쌀 공급량은 72kg에서 76kg으로 상승하여 1991년에는 81kg으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1인당 곡물 공급량은 152kg에서 143kg으로 감소했는데, 1997년에 171kg을 정점으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1인당 곡물 공급량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43~53%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이 밀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3년에 77kg에서 1992년에 81kg까지 증가했다가 내림세로 돌아서 1999년 현재 77kg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1인당 곡물 소비량에서 쌀의 비중은 45~54% 수준이다.

표 3-20. 인도의 쌀 생산

연도	면적 (1,000ha)	단수 (kg/ha)	생산량 (1,000톤)
1980	40,152	1,336	53,631
1985	41,137	1,552	63,825
1990	42,693	1,740	74,291
1995	42,837	1,797	76,975
1996	43,433	1,882	81,737
1997	43,446	1,900	82,535
1998	44,802	1,921	86,077
1999	44,972	1,990	89,475
2000	44,360	1,913	84,870
2001	-	-	93,100
2002	40,400	-	72,700
2003	44,000	-	88,000

주: 2002-03년 자료는 USDA 통계를 인용함.
자료: USDA. FAS(2004).

쌀 비축량은 2002년에 1,580만 톤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 10월에 520만 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198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비축량의 감소는 2002년 정부 수매물량의 저조와 가뭄으로 인한 국내 소비용 인출 증대, 보조를 통한 수출확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3월 현재 쌀 비축량은 1,710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나. 수출 현황과 전망

인도는 세계 제2위의 쌀 생산국이며, 주요 수출국으로 쌀 수출량(정곡 기준)은 2002년에 665만 톤으로 정점을 기록했고, 이는 태국의 725만 톤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수출량이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고품질 쌀인 향미(basmati)와 파르말(Super Fine Parmal) 쌀을 수출해 왔는데, 2001년부터 1,300만 톤의 일반미와 찐쌀을 수출용으로 방출하고 있다.

표 3-21. 인도의 쌀 수출량 추이

단위: 천 톤

	인도	세계	비율
1995	4,179	20,800	20%
1996	3,549	19,700	18%
1997	1,954	18,818	10%
1998	4,666	27,670	17%
1999	2,752	24,941	11%
2000	1,449	22,846	6%
2001	1,936	24,442	8%
2002	6,650	27,883	24%
2003	4,200	27,191	15%
2004	2,500	25,486	10%

자료: USDA. ERS(2003).

향미는 해마다 60만 톤 정도가 높은 가격으로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중동국가, EU, 미국 등에 수출되며 품질이 낮은 장립종 쌀은 정곡 형태로 주로 개도국에 수출한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방글라데쉬,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러시아, 남아공,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이다. 특히 남아공과 중동으로 수출되는 쌀의 대부분은 일반미보다 높은 가격의 찐쌀(parboiled rice)이다.

2002년 이후 수출량은 감소해 2003년에 400만 톤을 조금 넘었고, 2004년에는 250만 톤에 그쳐 태국(800만 톤), 베트남(400만 톤), 미국(300만 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중국과 더불어 세계 제4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이후 수출이 줄고 있는 것은 공급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기상재해로 2002/03년에 생산량은 7,570만 톤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9%나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정부가 2003년 8월부터 보조된 쌀을 수출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중단했고, 수출용 판매가격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5.2. 쌀 가격 추이와 국제경쟁력

쌀의 국내가격은 2002~2003년에 톤당 190 달러에서 200 달러로 상승하였다. 인도와 주요 쌀 수출국의 수출가격(쇄미 5%, FOB 가격)을 비교하면 <표 3-22>와 같다. 1997년 이후 인도 쌀의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3년 가격이 톤당 178 달러로 경쟁국인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쌀 수출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의 지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출 여력 및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쌀 국내 비축량 감소로 수출용 배분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달러에 대한 루피 절상 효과, 민간업체에 의한 수출가격(25%

쇄미 기준)도 톤당 245~250달러로 국제가격보다 높아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된다.

표 3-22. 쌀 수출가격의 비교: 쇄미 5%, FOB 가격

단위: 달러/톤

연도	인도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1997	286	269	293	255
1998	276	257	276	
1999	268	203	222	209
2000	202	165	177	
2001	171	185	186	198
2002	182	182	194	185
2003	178	189	195	200

자료: USDA. ERS(2003).

2.6. 아르헨티나

2.6.1. 쌀 산업의 현황과 특징

쌀은 관개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지표수의 공급이 원활하고 아열대성 온대기후의 평야지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농가규모는 다양하지만, 200ha이상의 농가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10-11월 재배하여 다음해 3-4월에 수확하고 있다.

2003년(양곡연도)에는 쌀 생산이 전체 주요 곡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였으며 이중 35%가 주로 남미 시장 내로 수출되고 있다. 일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단립종이 생산되지만 대부분 장립종 쌀이 생산되고 있다.

주 생산지역은 평야지대인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북서부 지역(Pampa Humeda)의 엔트레 리오스(Entre Rios), 산타페(Santafe), 코리엔테스(Corrientes) 지역이며 국가 전체에서 수확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엔트레 리오스가 55.6%, 코리엔테스가 32.6%, 산타페가 5.71%이다. 특히 엔트레 리오스는 주로 장립종 쌀을 생산하여 대부분 브라질로 수출하고 있지만 다른 인접 국가들의 소비자 기호에 맞지 않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헨티나의 쌀 생산에 장애가 되는 주요 요인은 높은 생산비용, 쌀 유통을 위한 대외 의존성, 코리엔테스 지역의 모래토양으로 인한 잦은 홍수, 잡초 확산 문제 재배 및 수확시기 초 낮은 온도 등이다.

2.6.2. 쌀 수급과 수출입

가. 수급 현황과 전망

표 3-23. 쌀 수급 동향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유통연도	수확면적	단수	공급				수요			
				기초재고	생산	수입		수출	소비	기말재고
1990	110	4.2	344	44	299	1	344	75	219	50
1995	193	5.1	772	124	641	7	772	366	210	196
1996	224	5.4	988	196	783	9	988	530	215	243
1997	212	4.9	924	243	673	8	924	543	220	161
1998	289	5.7	1254	161	1078	15	1254	741	225	288
1999	189	4.8	891	288	588	15	891	417	230	244
2000	151	5.8	824	244	567	13	824	378	235	211
2001	124	5.7	685	211	463	11	685	150	245	290
2002	133	5.4	775	290	467	18	775	175	265	335
2003	170	5.4	941	335	596	10	941	325	275	341

주: 정곡 기준임.

자료: USDA. FAS.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PS&D online.

쌀 생산량은 1998년에 최고 정점을 이룬 이후 감소하다가 2003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1999-02년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브라질의 수입저조,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확면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수확면적은 1998년 28만 9,000천 ha에서 200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2003년 17만 ha로 다시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쌀의 높은 생산비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대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국내 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달하고 있다.

나. 수출현황과 전망

세계 쌀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서 1998년 세계 수출시장 대비 2.8%로 정점을 이룬 이후 2002년

표 3-24. 쌀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유통연도	아르헨티나(A)	세계(B)	비중(A/B)
1990	75	12,115	0.6
1991	207	14,453	1.4
1992	276	14,876	1.9
1993	203	15,857	1.3
1994	327	21,093	1.6
1995	366	19,820	1.8
1996	530	19,110	2.8
1997	543	26,646	2.0
1998	741	25,757	2.9
1999	417	22,974	1.8
2000	378	24,167	1.6
2001	150	26,898	0.6
2002	175	28,732	0.6
2003	325	24,970	1.3

주: 유통연도, 정곡 기준임.
자료: USDA. FAS.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PS&D online.

0.6%로 감소하다 2003년 다시 1.3%로 상승하였다. 주요 쌀 수출시장은 브라질로 1996년 총 수출량 가운데 80%가 수출되었으며 나머지가 인근 남미국가, 아프리카, 일부 서남아시아 국가로 수출되었다. 쌀 산업의 경제성은 주로 브라질의 경제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쌀 수출국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2.7. 이집트

2.7.1. 쌀 산업 현황

가. 쌀 수급 및 교역 동향

벼의 재배면적은 1995년 56만 ha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63만ha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생산량도 1995년 260만 톤에서 2003년 397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쌀 소비량은 생산량의 85% 수준인 330만 톤 안팎으로 쌀 자급률은 110~130%이며, 1인당 쌀 소비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1995년 3.6kg에서 2003년 44kg으로 증가).

표 3-25. 이집트의 쌀 수급 현황

	수확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 소비량 (kg/1인)
1995	560	4.64	2,600	2,443	100	106.4	38.6
1996	591	5.06	2,989	2,619	269	114.1	40.5
1997	630	5.57	3,510	2,769	600	126.8	41.9
1998	504	5.25	2,645	2,771	200	95.5	41
1999	654	5.79	3,787	2,856	631	132.6	41.4
2000	655	6.05	3,965	3,015	887	131.5	42.8
2001	563	6.35	3,575	3,150	864	113.5	43.8
2002	588	6.3	3,705	3,275	765	113.1	44.7
2003	630	6.3	3,972	3,300	737	120.4	44.2

주: 정곡 기준임.
자료: USDA. FAS. PS&D online.

한편 쌀 수출은 1995/96년 34만 톤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3/04년에는 7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 지역은 북아프카와 중동 및 일부 유럽이다.

2.8. 캐나다

캐나다는 쌀 생산이 없으며, 반대로 매년 일정한 양의 쌀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수입국으로서 식품가공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일부 쌀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캐나다의 쌀 수입량은 1990/91년 19만 톤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3/04년에는 25만 톤 수준으로 그 대부분이 식용으로 사용되지만 일부는 쌀 가공식품의 원료로 이용하여 재수출되고 있다.

표 3-26. 이집트의 쌀 수출 현황

유통연도	이집트(A) (천 톤)	세계(B) (천 톤)
1995/1996	338	370,998
1996/1997	201	380,363
1997/1998	426	386,801
1998/1999	320	394,363
1999/2000	500	408,697
2000/2001	705	397,978
2001/2002	473	398,436
2002/2003	579	378,235
2003/2004	700	390,220

주: 정곡 기준임.
자료: USDA. FAS.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PS&D online.

캐나다는 관세화유예 대상인 일부 쌀 가공품을 우리나라에 소량(2003년 기준 약 10만 달러) 수출한 실적이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여 이번 쌀 협상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3-27. 캐나다의 쌀 가공품 對韓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kg

	HS 1901209000 베이커리제조용품(기타)		HS 190109099 조제식료품기타(기타)	
	금액	물량	금액	물량
1996	17	14,520	85	40,213
1997	3	893	113	86,839
1998			114	97,080
1999			131	112,389
2000			409	339,107
2001	7	1,382	259	209,647
2002	83	60,649	18	24,000
2003	99	46,612		

제 4 장

일본과 대만의 쌀 협상 경험과 시사점

1. 일본의 관세화 전환 과정과 내용

1.1. 관세화 전환 배경

일본은 UR 농업협상 당시 쌀에 대해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 물량인 MMA를 1986-88년 평균 소비량의 4%에서 8%까지 증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MMA 쌀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 통해 관리하고, 그 일부를 동시매매입찰방식(SBS)을 통해서 민간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6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확보한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관세화 전환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 이후 계속되는 풍작과 당시 쌀 재고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연간 0.8%의 MMA 수입 쌀의 증가로 재고가 급증함에 따라 재고 문제가 농정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었다. 둘째, WTO 체제하에서 쌀 관세화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농정개혁이 추진되었고, 조기에 관세화할 경우 연간 증량되는 수입량이 0.8%에서 0.4%로 반감되는 이점도 부각되었다. 셋째,

한국, 필리핀, 이스라엘 등 일부 소수의 국가만이 적용하고 있는 특별조치를 고집하는 경우 뉴라운드에서 일본의 입장이 약화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익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2. 관세화 전환 내용

일본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3개월 전인 1998년 12월 21일 관세화 전환 내용을 포함한 관세 양허표(Country Schedule, C/S) 수정안을 WTO 시장접근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통보문에는 GATT의 1980년 3월 26일 관세양허표의 변경 및 수정에 관한 절차를 근거로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제2절에 준해서 1999년 4월 1일부터 쌀의 특별대우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화 전환에 따라 제출된 C/S 수정안의 쌀 관련 관세부분(Section I-A)과 관세할당 부분(Section I-B)의 주요 내용은 <표 4-1>과 같다. 관세부분에서 기존 관세화유예 대상 품목에 표시하는 'ST-Annex 5'를 삭제하고, 대신 농업협정문에 의거 특별세이프가드(SSG)를 표기하고 있다. 관세부분의 주석사항(Notes to section I-A of Part 1)에는 관세감축이 1995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 동안 이행된 것으로 상정하고, 관세상당치에 의한 실제 관세감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관세할당 부분(Section I-B)은 세 번별 품목명을 모두 삭제하고 간단명료하게 표기하였다. 쌀과 가공품 혹은 조제품으로 종합 표기하고 관세화에 따른 초기 할당물량과 최종 할당물량 등을 표기하고, 관세화에 따라 'ST-Annex 5'를 삭제하였다. 관세할당의 주석사항(Notes to section I-A of Part 1)에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증량 수준만 간략히 명시하고, 기존 쿼터 내 관세의 적용방식에 대한 부대조건을 삭제하였다.

실제 일본의 관세상당치 계산은 기준 연도 태국산 주정용 수입가격(32엔/kg)을 국제가격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소비량의 64%를 차

지하는 일본 국내산 상급미 도매가격(434엔/kg)을 대표적인 국내가격으로 간주하여, 이 가격간의 차이인 402엔/kg을 기준 관세상당치로 산출하였다<표 4-2>.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1999년까지 5년간의 감축율인 12.5%를 적용하여 1999년 관세상당치를 351엔/kg, 2000년 이후 관세상당치를 341엔/kg으로 산출하였다.

표 4-1. 일본의 C/S 수정안 주요 내용

Part I Section I-A 관세	Part I Section I-B 관세할당
• 1995년 양허기준세율: 402엔/kg • 2000년 양허세율: 341엔/kg •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명시 • 1999년 4월 1일부터 관세율 적용	• 이행계획서의 관세할당물량 증량 수준 명시 1995 379,000톤 1996 454,800톤 1997 530,600톤 1998 606,400톤 1999 644,300톤 2000 682,200톤 ※ 정곡기준 • 초기할당물량: 379,000톤 • 최종할당물량: 682,200톤

표 4-2. 일본의 관세상당치 산정근거

단위: 엔/kg

기준년도	국제가격(A) CIF가격[1]	국내가격(B) 대표적인 도매가격[2]	기준 관세상당치 (B-A)
1986년	29	438	409
1987년	31	435	404
1988년	37	429	392
평 균	32	434	402

주 1) 기준기간 수입실적인 1986년 19,354톤(수입액 552,536천엔), 1987년 16,563톤 (513,723천엔), 1988년 16,000톤(597,753천엔)을 기준으로 산출함.
2) 1986-88년도 소비량의 64%를 차지하는 '상급미'의 도매가격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당시 일본은 농업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관세화유예 연장 여부의 경우 양자간 협상의 대상이지만,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 협상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화 이행시기, 관세상당치 및 산출근거, TRQ 관리방식 등을 포함한 C/S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통보하고, 이 내용을 회원국을 상대로 공시하여 3개월 동안 회원국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C/S 수정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호주, 아르헨티나, EU, 우루과이 등 4개국은 일본이 통보한 관세상당치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계산되었다고 이의를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관세상당치가 농업협정문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고 상대국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관세화 이행시기를 넘긴 2001년 12월에 C/S 수정안이 확정되었다.

한편 당시 일본의 MMA 수입량의 50% 정도를 차지한 미국은 MMA 증량폭을 억제하는 것은 무역자유화에 반하는 조치이며, 쇄미를 포함한 수입 쌀과 국산 고급쌀의 가격을 비교하여 관세상당치를 지나치게 높게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지만,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관세화 전환에 대해 WTO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본의 쌀 쿼터 관리규정 아래서 미국에게 부여한 이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쌀 수입 현황 및 관리방식

일본은 TRQ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341엔/kg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TRQ 평균 수입가격 기준으로 490%의 세율이지만, TRQ 수입 가운데 일반수입 가격 기준으로 630%, SBS 수입 가격 기준으로 300% 정도의 높은 세율이다. 따라서 TRQ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최근 관세에 의한 수입이

저지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MMA 물량이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RQ 실적을 보면, 1995～2003년 동안 쌀 수입량 가운데 민간 실수요자에 의한 SBS 수입 비중은 12.9%로 대만의 3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국별 수입량을 보면, 국영무역의 일반수입은 미국이 52.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태국(23.6%), 호주(13.7%) 등이 차지하고 있다. SBS 수입은 중국이 78.8%를 차지하고, 미국이 18.2%로 양국이 SBS 수입의 97%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4-3>.

수입 쌀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일본은 TRQ 수입쌀의 매입 시 약속한 양을 수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림성의 리스크 부담 아래 판매하는 '일반수입'과 민간에게 배분하는 'SBS 수입' 등 2가지 방법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수입은 매각실적, 도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의 의향조사 등에 의해 국내수요를 파악하여, 수입국 및 규격을 지정하여 수입하는 '수입국지정수입'과 수입국은 지정하지 않고 규격만 지정하여 입찰하는 '글로벌 텐더' 등 2가지 방법으로 수입하고 있다. 2003년 수입국지정수입 방식에 의해 수입된 46만 톤 가운데, 미국이 55%, 태국이 29%, 호주가 12%를 차지하였고, 글로벌 텐더 방식에 의해 수입된 11만 톤 가운데 미국이 43%, 베트남이 36%, 호주가 21%를 차지하였다.

SBS 수입은 수입국도 규격도 지정하지 않고, 단지 수입업자와 도매업자가 공동으로 응찰하여, 마크업(Mark-up)이 큰 순서로 계획된 물량까지 낙찰하는 방식이다. 2003년도 SBS 수입량은 10만 톤이었으며, 2004년도에도 10만 톤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TRQ 수입쌀의 판매시에는 가급적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운용방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즉, 수입쌀 판매 시에는 국산쌀에 영향이 적도록 '가공용'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비축을 하면서 '원조용'과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표 4-3. 일본의 쌀 TRQ 수입 현황

단위: 톤, %

연도	구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기타	합계	A/B (%)
1995	SBS(A)	5,715(53.4)	2,390(22.3)	246(2.3)	1,935(18.1)	408(3.8)	10,694(100.0)	2.6
	일반수입	188,000(47.2)	30,000(7.5)	95,100(23.9)	85,000(21.4)	0(0.0)	398,100(100.0)	
	계(B)	193,768(47.4)	32,412(7.9)	95,348(23.3)	86,953(21.3)	412(0.1)	408,894(100.0)	
1996	SBS	14,134(64.2)	5,113(23.2)	360(1.6)	1,173(5.3)	1,220(5.5)	22,000(100.0)	4.7
	일반수입	201,000(45.3)	35,000(7.9)	127,650(28.8)	80,000(18.0)	0(0.0)	443,650(100.0)	
	계	215,198(46.2)	40,136(8.6)	128,012(27.5)	81,178(17.4)	1,226(0.3)	465,750(100.0)	
1997	SBS	34,657(62.9)	13,882(25.2)	911(1.7)	3,159(5.7)	2,532(4.6)	55,141(100.0)	10.1
	일반수입	237,900(48.6)	30,000(6.1)	133,900(27.4)	82,400(16.8)	5,000(1.0)	489,200(100.0)	
	계	272,620(50.1)	43,907(8.1)	134,813(24.8)	85,565(15.7)	7,537(1.4)	544,441(100.0)	
1998	SBS	36,498(30.4)	61,965(51.6)	5,297(4.4)	14,538(12.1)	1,702(1.4)	120,000(100.0)	19.0
	일반수입	265,400(51.8)	10,000(2.0)	130,000(25.4)	87,000(17.0)	20,000(3.9)	512,400(100.0)	
	계	301,928(47.7)	72,017(11.4)	135,301(21.4)	101,550(16.1)	21,703(3.4)	632,500(100.0)	
1999	SBS	36,826(30.7)	62,611(52.2)	3,753(3.1)	14,587(12.2)	2,223(1.9)	120,000(100.0)	18.4
	일반수입	276,000(51.8)	13,900(2.6)	138,200(25.9)	90,000(16.9)	15,000(2.8)	533,100(100.0)	
	계	312,857(47.9)	76,563(11.7)	141,956(21.7)	104,599(16.0)	17,225(2.6)	653,200(100.0)	
2000	SBS	46,273(38.6)	53,264(44.4)	4,960(4.1)	14,269(11.9)	1,234(1.0)	120,000(100.0)	17.3
	일반수입	284,000(49.6)	35,000(6.1)	144,370(25.2)	94,000(16.4)	15,669(2.7)	573,039(100.0)	
	계	330,312(47.7)	88,308(12.7)	149,334(21.5)	108,281(15.6)	16,904(2.4)	693,139(100.0)	
2001	SBS	25,173(25.2)	65,702(65.7)	421(0.4)	8,529(8.5)	175(0.2)	100,000(100.0)	14.7
	일반수입	298,877(51.5)	55,516(9.6)	129,376(22.3)	91,500(15.8)	4,700(0.8)	579,969(100.0)	
	계	324,075(47.7)	121,284(17.8)	129,797(19.1)	100,038(14.7)	4,875(0.7)	680,069(100.0)	
2002	SBS	20,122(40.2)	24,247(48.4)	1,327(2.7)	4,077(8.1)	294(0.6)	50,067(100.0)	7.4
	일반수입	301,676(47.9)	75,690(12.0)	134,808(21.4)	82,500(13.1)	34,800(5.6)	629,474(100.0)	
	계	321,798(47.4)	99,937(14.7)	136(20.0)	86,577(12.7)	35,094(5.2)	679,541(100.0)	
2003	SBS	18,216(18.2)	78,803(78.8)	1,145(1.1)	1,570(1.6)	266(0.3)	100,000(100.0)	14.9
	일반수입	298,000(52.2)	19,500(3.4)	134,700(23.6)	78,400(13.7)	40,500(7.1)	571,100(100.0)	
	계	316,216(47.1)	98,303(14.6)	135,845(20.2)	79,970(11.9)	40,766(6.1)	671,100(100.0)	

주: ( )는 비중임.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 GAIN Report.

SBS로 수입되는 쌀은 주로 주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나 이에 상당하는 국내산 쌀을 '주식용 이외의 용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TRQ 수입 쌀에 대해 국영무역을 통해 정부가 전량 매입하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만과는 대조적으로 가공용, 사료용, 원조용 등 일본산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용도로 판매함으로써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있다.

2. 대만의 관세화 전환 과정과 내용

2.1. 관세화 전환 배경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에 대해 1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였다. 이 대가로써 1990-92년 평균 소비량의 8%에 달하는 144,720 톤의 MMA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MMA 수입 쌀의 65%는 국영무역으로, 35%는 민간수입으로 배분하였다.

2002년 1년간 관세화 유예를 약속한 대만은 2003년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2002년 중에 협상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만도 일본의 관세화 선례를 참고로 관세화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관계국과의 협상없이 실시 3개월 전인 2002년 9월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WTO에 통보하였다. 한편 국내적으로 대만의 관세화는 세관수입세칙 및 식량관리법 수정안에 법적 근거를 두고 200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통령령에 의해 12월 말 공포・시행되었다.

대만도 관세화로 전환한 이유는 일본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당시 대만은 시장개방 1년 차에 MMA 수입 쌀의 8%를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MMA 물량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고, 쌀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더욱 가중되어 협상 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고, MMA 쌀 증량이 일본과 같이 적어도 연간 0.8%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이것이 장기적인 수급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2. 관세화 전환 내용

대만은 2002년 9월 30일 GATT 제28조의 양허표 수정을 근거로 2003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관세에 의해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을 WTO에 통보하였다. 대만도 일본의 선례에 따라 관세화 전환조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WTO 농업협상의 규정에 따라 관세화 조치의 이행시기, 관세상당치 및 산출근거, TRQ 관리방식 등을 포함하는 CS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관세화 전환에 따라 제출된 C/S 수정안의 TRQ 관리 부분(Section I-B)의 주요 내용은 <표 4-4>와 같다.

첫째, 정부 비축미가 산업용 및 식용의 국내 유통 허용, 둘째, 수입 쌀의 재수출 금지, 기존 수량제한방식에서 관세할당방식으로 수

표 4-4. 대만의 이행계획서(CS) 수정안 내용

	주요 내용
(1) 이행시기	○ 이행시기: 2003년 1월 1일
(2) 수입방식	○ 수량제한방식에서 관세할당방식으로 전환
(3) 관세상당치	○ 관세상당치: 45 대만달러/kg
(4) TRQ 수입량	○ 144,720톤(국영무역 65%, 민간무역 35%)
(5) TRQ 관리방법	○ 원조용·사료용 사용금지, 적정시기에 매도 - 산업용 및 식용 사용, 수입 쌀 재수출 금지

입방식 전환, 셋째, 정부의 쌀 수입은 국제 공인 쌀 교역 기준에 준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의 수입 쌀 비중은 65% 유지, 넷째, 민간의 수입 비중은 35%를 유지하고 식품유통업자로 등록된 모든 무역업자(체)들도 쿼터 배정에 참여 가능, 다섯째, 농업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국내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특별세이프가드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기존 MMA물량은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대만이 WTO에 C/S 수정안과 함께 제출한 관세상당치 산출자료에 의하면, 국제가격은 기존에 수입하고 있던 태국산 가공용 수입가격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국내가격은 소비량의 45%를 차지하는 국내산 '브랜드쌀' 도매가격을 사용하되, 기준연도인 1990-92년의 도매가격자료가 없기 때문에 1999～01년도 가격을 도매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가격과의 차액 52.61 대만 달러를 기준 관세상당치로 산정하고, 기준 관세상당치에 UR 농업협상의 관세감축 수준인 15%를 감축하여 최종적인 관세상당치는 1kg당 45 대만 달러(52.61 대만 달러×0.85)를 제시하였다<표 4-5>.

표 4-5. 대만의 관세상당치 산정근거

단위: 대만 달러/kg

기준년도	국제가격(A) CIF가격[1]	국내가격(B) 대표적인 도매가격[2]	기준 관세상당치 (B-A)
1990년	7.60	61.58	53.97
1991년	8.38	61.68	53.29
1992년	9.00	59.41	50.41
평 균	8.28	60.89	52.61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

관세화 전환조치를 포함하는 C/S 수정안에 대해 이해당사국들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미국, 호주, 태국 등 3개국은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해서 이해당사국과 협상을 거쳐야 하고, 관세상당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신청하였다. 현재 대만은 관계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C/S 수정안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관련법을 개정하여 관세화를 단행하고, 2003년 5월 특별세이프가드(SSG)를 발동하여 12월 말까지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3. 쌀 수입 현황 및 관리방식

대만은 1kg당 45 대만달러의 관세를 종량세로 쌀에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종가세 기준으로는 562%에 상당하는 세율이지만 2003년도 TRQ 수입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390% 수준의 세율이다. TRQ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TRQ를 초과하는 쌀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TRQ 물량은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TRQ물량이 대만 쌀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과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비축미의 산업용 또는 식용 목적으로 국내 유통 경로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수출용 쌀 수입은 TRQ제도에서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쌀 수입은 쌀 교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은 쌀 시장개방 직전에 태국에서 매년 3,000～5,000톤 정도의 쌀을 가공용으로 수입하고 있었다. 2002년 시장개방 이후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2002년은 MMA 수입이 144,732톤, 2003년은 관세화로 전환함에 따라 TRQ 수입이 144,649톤에 달하고 있다. 의무수입물량이 현미기준으로 144,720톤이지만 실제 수입은 현미와 백미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에 차이가 있다. 2003년은 TRQ 이외 수입은 고관세로 인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2년 정부수입은 관세화 유예 시기인 2002년에 미국과 호주에서만 수입되었으나 관세화로 전환한 2003년에는 미국·호주 이외에 태국과 이집트에서도 수입이 이루어졌다. 민간수입은 2002년에 미국, 태국, 호주, 일본으로부터 이루어졌고 2003년에는 이집트가 추가되었다.

국별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2002-03년 정부수입은 미국이 2년 동안 각각 74.5%를 차지했고, 나머지 25.5%는 호주, 태국, 이집트 등이 차지했다. 2003년 관세화 전환조치 이후 민간수입은 태국이 61.4%, 이집트가 28.2%, 미국이 9.2%, 일본이 0.6%, 호주가 0.5%의 순으로 차지했다.

대만의 쌀 수입 특징은 일본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주식용인 일본, 호주, 미국 등의 고급쌀과 가공용인 태국, 이집트 등의 저급쌀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태국으로부터는 고급 품종인 향미가 일부 수입되고 있다<표 4-6>.

표 4-6. 대만의 WTO 가입 후 국가별 쌀 수입량, 2002-03년

단위: 톤, 현미

		미국	태국	호주	이집트	일본	기타	합계
2002	정부수입	70,068 (74.5)	-	24,000 (25.5)	-			94,068 (100.0)
	민간수입	29,279 (57.8)	18.362 (36.2)	2,244 (4.4)	-	332 (0.7)	447 (0.9)	50,664 (100.0)
	합계	99,347 (68.6)	18,362 (12.7)	26,244 (18.1)	-	332 (0.2)	447 (0.3)	144,732 (100.0)
2003	정부수입	70,068 (74.5)	6,000 (6.4)	8,000 (8.5)	10,000 (10.6)	-		94,067 (100.0)
	민간수입	4,676 (9.2)	31,056 (61.4)	268 (0.5)	14,265 (28.2)	298 (0.6)	18 (0.0)	50,581 (100.0)
	합계	74,744 (51.7)	37,056 (25.6)	8,268 (5.7)	24,265 (16.8)	298 (0.2)	18 (0.0)	144,649 (100.0)
2004	합계	40,159	26,499	7,204	24,921	316	859	99,958

주: MMA 또는 TRQ 수입량임.

자료: 정정길, 이현주(2004).

3.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시사점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한 이후 일본은 5년, 대만은 1년을 경과하고 있다. 양국 모두 중요 품목인 쌀에 대해서 관세화 유예라는 부분 개방에서 관세화라는 완전 개방으로 전환하는 등 유사한 시장개방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 무세의 TRQ 수입과 TRQ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하는 유사한 수입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다. 양국이 관세화로 전환한 배경에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는 적어도 연간 0.8% 이상의 MMA 증량이 불가피하고, 더구나 대만은 현재의 8%도 국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양국은 관세화 과정에서 관세화 전환 조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WTO 농업협정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관세상당치 등을 결정하여 WTO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WTO 통보 내용에 대해서 미국, 호주, 태국 등 3개국이 관세화 전화조치도 무역 상대국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거쳐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대만은 관계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C/S 수정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국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관세화를 단행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쌀에 대한 SSG를 발동한 바 있다.

관세화 이후 쌀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의무수입물량은 전량 수입되고 있지만, 관세에 의한 수입은 관세화 초기 단계의 고관세로 인해서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TRQ 수입 쌀이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TRQ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영향을 줄이고 있는 반면, 대만은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연도의 8%인 TRQ 물량이 2003년 기

준으로 12.6%에 달하고 있고 더구나 일본, 호주, 미국 등 고급쌀이 시장에 시판됨에 따라 산지에서 소비지 시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TRQ 관리 방식과 관련하여, 일본은 수입단계에서 수입국 지정 수입 방식을 통해 국별, 용도별로 물량을 지정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판매단계에서 일본은 가공용, 원조용, 사료용 등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이 적은 용도로 판매하면서 필요에 따라 장기 보유도 하는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TRQ 관리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 쌀이 시장에 유입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시장개방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도록 수입 쌀은 원조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있고, 적절한 기한 내에 시중에 방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과 대만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의 쌀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 상대국은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를 위한 MMA 물량 증량 요구와 함께 시장개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TRQ 물량의 투명한 관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제 5 장

쌀 시장개방 시나리오 분석

1. 기본인식

1.1.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장・단점

1.1.1. 관세화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제 쌀 시장의 가격 변동이 그대로 국내에 전달되어 자칫 국내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하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은 생산량에 비해 교역량이 매우 적은 엷은 시장(thin market)의 특성을 갖고 있어 국제 쌀 수급의 조그만 변동에도 국제가격이 불안정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관세로 인한 국경보호효과가 커져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관세화의 장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자포니카 계열의 주요 소비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기 때문에 쌀 시장개방의 확대로 세계시장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관세

화에 의한 국경보호효과는 예상외로 커질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관세로 인한 국경보호효과가 낮아져 관세화가 불리하게 된다. 이 경우 관세화로 전환한 품목에 한하여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라는 방어장치가 있다. 물론 완전한 안전장치는 아니지만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국제가격이 급락하여 어떤 해의 쌀 수입량이 이전 3개년 평균수입량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해 관세의 1/3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국제가격 하락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초기관세가 높을 경우 특별 세이프 가드를 이용하면 사실상 초기 수입량은 이전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5%를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DDA 농업협상의 추이를 고려할 경우 관세화는 우선적으로 DDA 농업협상의 타결까지 쌀의 관세감축과 MMA증량 의무의 동결이라는 장점이 있다. 향후 2-3년 DDA 타결이 늦추어진다면 2006년이나 2007년까지는 2004년의 쌀 시장 개방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장 최근의 모델리티 기본골격 초안인 데르베즈 초안을 따를 경우 관세상한의 예외가 허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쌀을 개도국의 특별 품목으로 이용하면 소폭의 관세감축은 물론 MMA 증량 면제도 가능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선진국의 NTC품목으로 활용해도 UR공식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관세감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 개방의 폭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관세상한이 설정되어 쌀의 관세가 대폭 감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쌀을 관세화 할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설정될 관세 (상당치)의 크기와 감축폭, 향후 세계시장가격의 흐름과 환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동시에 관세화의 유·불리가 그에 기초하여 결정될 것이다.

1.1.2. 관세화 유예

쌀의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경우 대표적인 장점은 국영무역을 이용하여 MMA물량을 정부의 관리나 혹은 조절이 용이하도록 만들 수 있어 관세화에 비해 그만큼 국내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은 향후 MMA관리에 대한 엄격한 WTO규제 마련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현재와 같이 MMA쌀의 수입에 최종 용도를 규정하는 인위적 관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관세화 유예과정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다. 대만은 2002년 1년에 한해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국내소비량의 8%를 MMA로 설정하였고 그 관리에 있어서 MMA의 65%만이 정부가 수입하고 나머지 35%는 민간이 선착순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민간수입의 경우 해당 연도 MMA의 전량이 반드시 수입되어 시장에 공급되도록 MMA의신속한 재배정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관세화 유예 연장의 성패는 유예 연장을 위해 증량해 주어야 할 MMA 수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이와 함께 관세화 유예 연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예를 위해 증량된 MMA는 계속 허용되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점이며, 동시에 관세화 유예 연장 기간에도 쌀의 관세를 계속해서 감축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관세화 유예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서 관세화에 비해 수입량의 예측 가능성이 보다 명확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의 안정화 도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5-1.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특징

	관세화	관세화유예
1. 수입물량의 예측성	○ 불확실 - 국제가격, 환율, 쌀 관세 및 국내가격에 따라 수입량이 결정되므로 유예보다 상대적으로 불확실. - 국제가격이 높으면 보호효과 커져 수입물량 축소 - 국제가격이 낮으면 수입 급증 우려	○ 확실 - 협상에서 합의된 물량에 따라 매년 수입량이 결정됨으로 관세화에 비해 수입량 예측이 용이
2. 의무수입 여부 가. 기존 MMA(4%) 나. 기존 MMA를 초과하는 수입	 ○ 의무 수입 ○ 국제가격, 환율, 관세 및 국내가격 수준에 따라 수입이 결정됨.	 ○ 의무 수입 ○ 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의 추가 MMA는 의무적으로 수입
3. 특별세이프가드(SSG)	○ 수입 급증시 당해연도 관세의 1/3을 추가로 부과 가능	○ 관세화한 품목에 한해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용 불가
4. TRQ 관리	○ DDA 협상에서 결정됨 - 현재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	○ 이번 협상에서 결정 - 민간자율수입 등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 높음
5. 쌀의 관세	○ DDA 협상에서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낮아짐 - 관세상한 적용 가능성은 낮음	○ 유예기간에도 쌀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 존재
6. 이행연도	○ DDA가 합의되어 결과가 이행되는 시점	○ 원칙적으로 2005년부터 이행

1.2. 관세화와 유예 간의 동등성 분석

협상 결과 상대국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시장개방의 수준(유예기간 및 MMA 증량 폭 등)이 쌀을 관세화 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량 보다 많다면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반대로 적다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협상전략 및 정책 선택의 핵심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간 동등성 수준의 판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관세화에 따른 예상 쌀 수입량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유예의 조건으로 제시된 MMA수준과 비교함으로써 동등성을 판단하였다.

2.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하빈슨 초안은 모델리티 합의 도출 실패로 사문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부 기술적 사항은 여전히 협상타결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하빈슨 초안에 따르면 관세감축은 관세수준별로 선진국의 경우 최소 25~45%, 개도국의 경우 최소 17~30%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특별품목 관세감축은 최소 5%, 평균 10%를 제시하고 있다. TRQ확대는 선진국의 경우 최소 8%까지, 개도국의 경우 최소 5%까지 확대되며, 특별품목의 경우는 TRQ증량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미국과 EU 공동제안 및 데르베즈 초안에서는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 공식으로 UR공식을 제시하고 있어 관세감축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NTC품목의 개념을 도입하여 선진국도 제한된 소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 적용의 예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폭에 있어서 파격적으로 우대하고 있다.

최근 합의된 기본골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쌀은 개도국의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설령 선진국이 된다고 해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감품목(특별품목)의 지정은 회원국 자율이다.

선진국 민감품목의 실질적 시장접근은 관세감축과 TRQ약속의 조합으로 하되, 관세감축 공식과의 편차를 고려하게 되어 있어 관세를 적게 감축하면 할수록 TRQ 증량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러나 민감품목 관세감축의 신축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만 협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소위 “일본조항”이 추가되어 있어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은 최종적으로 상당히 조정될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개도국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은 선진국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 보다 작을 것이고, 따라서 개도국 특별품목은 더욱 큰 우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시나리오 설정

3.1. 관세상당치

관세상당치(TE) 계산은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HS 4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적절할 경우 그 이상 세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쌀은 ① 쌀(1006:벼, 멥쌀, 찹쌀, 쇄미), ② 쌀가루, ③ 쌀의 분쇄물, ④ 쌀의 압착물, ⑤ 쌀을 포함하는 베이커리제품, ⑥기타 쌀 포함 가공품으로 분류된다. HS 6단위에서

는 벼, 현미(멥쌀, 찹쌀), 정미(멥쌀 찹쌀), 쇄미가 구분된다.

쌀의 관세상당치 계산의 기준년도는 1986-88년도로 고정되어 있으며, 사용될 국내가격은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도매가격(representative wholesale price ruling in the domestic market)이어야 한다. 만일 동 자료의 적절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가격 사용이 가능하다. 국제가격은 수입국의 실제 평균 수입가격을 이용해야 하지만 실제 수입가격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ⅰ) 인접국의 적절한(appropriate) 평균 수입가격 이나

(ⅱ) 적절한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에다 보험, 운송, 기타 관련비용의 추정치를 가산하여 계산

사용된 가격자료는 기준년도의 연평균 시장 환율을 사용하여 국내통화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품질 및 품종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적절한 계수를 이용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관세상당치에 대해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적절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하여 완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관세화시 쌀의 관세(상당치)는 우리나라가 최종 계산하여 WTO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격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 문제이지만 검증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 선택은 합리적/논리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계산된 TE는 가격자료에 따라 최소 426%에서 최고 502%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

[5]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예상되는 쌀의 관세화 및 WTO 차원의 관세상당치 검증절차를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3.2. 쌀의 특별품목화 가능성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의 개념은 최초에 하빈슨 초안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빈슨은 비공식접촉에서 우리나라 등 몇몇 어려운 국가들의 입장(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쌀)을 고려하기 위해 SP를 고안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쌀의 SP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핵심은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 문제로 귀착된다.

미국은 처음에는 SP의 취지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았으나, UR 공식 적용에 추가하여 SP를 허용할 경우 개도국 SP품목에 과도한 융통성을 부여한다며 이후 SP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EU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여 미국과 EU의 공동 제안에 SP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카스티요 초안에는 SP가 다시 등장하였고 데르베즈 초안에 SP와 SSM을 강조하는 G-33의 입장이 다시 추가 반영되어 SP의 융통성이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로 인해 SP가 없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문제는 그 선정 기준과 혜택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P와 관련된 시장개방의 폭은 선진국의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과 TRQ증량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3. 선진국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

현재의 관세감축방식은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에 기초한 것이며,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은 관세감축에 있어서 주로 EU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민감품목에 대한 것은 EU에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U의 기본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민감품목에 대한 EU의 기본 입장은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TRQ 증량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의 제안에 따를 때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감축 폭은 과거 UR방식과 동일한 6년간 평균 36%, 최소 15%였으며,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소수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수준이어야 함을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다(6년간 15%는 매년 2.5% 감축을 의미).

따라서 선진국의 민감품목에 적용될 관세감축 폭은 15%로 가정해 볼 수 있으며, UR때 보다 큰 폭의 관세감축을 고려할 경우 20%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UR때 보다 큰 폭의 관세감축은 다른 비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이 스위스공식 등의 적용을 통한 대폭 감축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 폭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가능하다(EU는 개도국 관심품목의 50%에 대해 관세철폐 용의를 언급).

결국 선진국 민감품목의 경우 감축 기준으로 15~20%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개도국의 민감품목 시장개방 폭을 선진국 수준의 2/3로 간주할 경우(과거 UR과 하빈슨 초안에서의 논리) 10년간 10~13.3%가 된다. 한편 SP의 경우는 다시 특별대우 하여 10% 이하의 관세감축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근거로 삼아 볼 때 하빈슨 초안에서 SP의 관세감축률을 최소 5%, 평균 10% 로 한 것과 결과적으로 유사해지게 된다.

결국 민감품목 관세감축 폭은 선진국의 경우 5년간 15%(20%) 감축, 평균 36%(40%) 감축하게 되며 개도국의 경우 10년간 최소 10%(15%), 평균 24%(30%) 감축하게 된다. 개도국의 SP는 10년간 최소 5%(10%), 평균 10%(15%) 감축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쌀의 경우 개도국 시나리오에서 10년간 최소감축 5%,

10%, 15% 3개가 가능하며, 선진국 시나리오에서 5년간 15%, 20%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4. 관세상한 설정 가능성

관세상한 설정은 기본적으로 민감품목이 고율 관세품목일 경우 민감품목에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모순된다. 그러나 미국과 EU 모두가 이를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과 EU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혹은 있다고 해도 감수 가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이나 노르웨이는(특히 일본) 이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관세상한이 설정된다면 100~1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데르베즈 초안이 나올 전후의 일본과 미국의 움직임에 근거해 판단해 볼 때, 관세상한 적용에 일부 예외를 허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쌀에 관세상한이 적용되면 당초 관세화 전환 당시 쌀 수급계획에 크게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 관세화로의 전환도 큰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일본은 당초 2020-2025년경 부터 미국 쌀의 본격적 수입을 예상하였으며 관세상한이 설정될 경우 2008년부터 중국 쌀, 2012년경으로 미국쌀의 본격적 수입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자체 보고서를 통해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관세상한 설정의 예외 인정 여부는 상당 부분 일본의 움직임에 달려 있고, 현재까지 흐름으로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신 TRQ가 일정 부분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쌀에 관세상한이 설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며(어떠한 식으로든 예외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문제는 이 경우 TRQ가 늘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3.5. TRQ 증량 폭

TRQ 증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입 선진국과 수출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으로서 매우 의견차가 크다. 그러나 TRQ 논의의 중요한 흐름은 관세감축과 TRQ증량의 상호 조합을 이용해 시장접근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평균 감축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할 경우와 최소감축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평균 감축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할 경우 최소감축의 경우 보다 큰 폭으로 TRQ를 증량해야 하며, 평균 감축률을 맞추기 위해 최대 감축을 한 품목은 TRQ가 증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감축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할 경우 평균 감축이나 최대 감축 모두에 TRQ증량이 면제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TRQ증량에 대해 하빈슨 초안은 최소 8%, 평균 10%(개도국은 최소 5%, 평균 6.6%)까지 확대하도록 제시하였다. 한편 과거 UR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3%에서 시작하여 5%까지 TRQ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평균 감축 품목에 8%(개도국은 5%)의 TRQ증량 폭을 설정한다면, 최소감축품목에는 10%(개도국은 6.6%) TRQ증량이 된다. 평균 감축 품목에 TRQ증량을 면제한다면, 최소감축 품목의 TRQ는 8%(개도국은 5%)가 된다. 이 중 어느 경우에나 개도국 특별품목은 5% 내지는 증량면제가 될 수 있다.

쌀의 경우 최소감축을 한다는 가정아래 TRQ는 선진국의 경우 8%, 개도국의 경우 6.6%로 볼 수 있으며, 개도국의 특별품목의 경우 5%(또는 2004년 수준 유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3.6. DDA 이행기간 및 시점

관세화 시 쌀의 시장개방은 DDA 농업협상의 일정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된다. 만약 쌀이 관세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모델리티 협상 타결 이후 검증과정을 거쳐 완전히 이행하기까지 현 상태로 동결되게 되므로 DDA 농업협상이 언제부터 이행되는가는 향후 10년 후의 수입량 비교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일 경우 이행기간 5년, 개도국일 경우 10년을 설정하였다.

현재 DDA 농업협상은 기본골격 합의를 이루었지만 목표한 바대로 2005년말에 모델리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최근의 동향을 감안할 때 DDA 이행 시점은 가장 빠른 경우 2007년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DDA 실질 이행기간은 2007년부터 개도국은 10년(2016년까지), 선진국은 5년(2011년까지)으로 정하였고 2008년이 이행개시 시점이 될 가능성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3.7. SSG 적용 여부

SSG는 일반 SG와 달리 발동 기준만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발동 가능한 특별조치로서 관세화한 품목에 한해서 적용 가능한 수입구제조치이다. 가격 및 물량기준 조치가 있으며, 물량기준 SSG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물량 발동 기준: $T = M \times \alpha + \Delta C \quad (\geqq M \times 105\%)$

  T: 발동기준

  M: 이전 3개년 평균 수입량(MMA, TRQ 포함됨)

  α: 125%(또는 110%, 105%), ΔC: 소비량의 변화

1995-2003년 동안 우리나라는 관세화한 품목 가운데 수입이 급증한 품목(평균적으로 8개 품목: HS 10단위로 약 52개에 해당)에 대하여 SSG를 발동한 경험이 있으며 쌀을 관세화 할 경우 수입량 급증시 SSG를 발동할 수 있다.

표 5-2. SSG 발동 실적

연도	품 목	건 수	부과액 (백만원)	품목수 (HS 10단위)
1995	땅콩, 메밀, 녹두 등 8개 품목	103	5,578	60
1996	땅콩, 고구마전분, 밀전분 등 8개 품목	200	9,519	61
1997	고구마전분, 땅콩, 녹두 등 7개 품목	175	9,241	61
1998	고구마전분, 땅콩, 녹두 등 7개 품목	79	3,073	61
1999	녹두, 고구마전분, 땅콩 등 6개 품목	343	11,390	46
2000	녹두, 팥, 메밀, 대두 등 10개 품목	876	25,582	45
2001	녹두, 팥, 메밀, 대두 등 10개 품목	634	15,689	45
2002	녹두, 팥, 메밀, 대두 등 7개 품목	807	17,231	45
2003	녹두, 팥, 메밀, 대두 등 9개 품목	1,020	19,801	45

표 5-3. SSG 물량 발동기준

	SSG 발동기준 (천 톤)				
	125% 기준	소비감소 반영	105% 기준	새로운 기준	
2002	153,900	153,900	153,900		
2003	179,550	179,550	179,550		
2004	205,200	205,200	205,200		
2005	224,438	154,438	188,528	188,528	(3.7)
2006	245,813	175,813	206,483	206,483	(4.0)
2007	257,034	187,034	215,909	215,909	(4.2)
2008	261,025	191,025	219,261	219,261	(4.3)
2009	266,883	196,883	224,182	224,182	(4.4)

주: 괄호 안은 MMA 기준 수입물량임.

쌀에 SSG를 발동할 경우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SSG 발동 기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관세화 초기에는 SSG 발동으로 추가관세의 국경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부터 관세화 할 경우 이전 3개년 평균 수입물량(MMA 포함)은 약 18만 톤이며, 이의 125%는 약 22만 4천 톤이다. 여기서 소비감소분 7만 톤을 빼 줄 경우 15만 4천 톤이 SSG 발동기준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은 최소한 과거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5% (18만 9천 톤)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추가규정에 따라 결국 우리나라의 2005년 SSG 발동기준은 이전 3개년 수입량의 105%인 18만 9천 톤이 된다.

그러나 MMA물량에는 SSG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2004년 MMA수준인 20만 5천 톤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만 SSG의 효과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 즉 쌀을 관세화할 경우 20만 5천톤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서 2005년 관세에 1/3을 추가하여 부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SG 발동 시 예상되는 적용관세는 520% 수준이어서 세계시장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발동기준을 초과한 대량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8. 국제가격 및 환율 전망

세계 주요 연구기관은 세계 쌀 생산 증가율 둔화와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쌀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국제 쌀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APRI는 2013/14년 국제 쌀 가격(인디카, FOB)을 326~344달러/톤으로 전망하여 2004/05년 227~265달러/톤 대비 30~44%, 연평균으로 2.9~4.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도 2008/09년 가격(인디카, FOB)을 2004/05년 대비 16% 상승한 256달러/톤으로 전망하였다(연평균 3.8% 상승). USDA의 장기전망 자료는 국제 쌀 가격이 2013/14년까지 연평균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5-1. 국제 쌀 가격 장기전망: USDA,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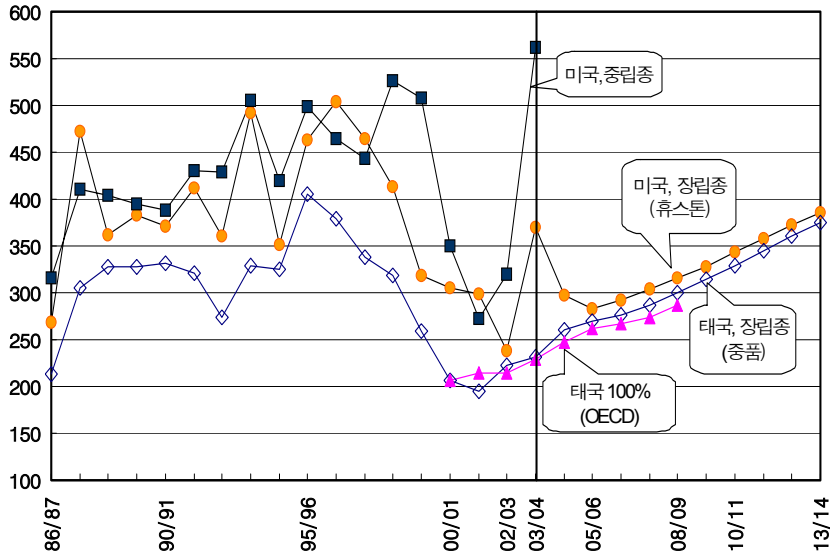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실제 MMA 도입 실적에 기초한 수입가격은 중국산 중·단립종의 경우 1996-2003년 평균 388달러/톤(정미, CIF), 미국산은 2001~2003년 평균 437달러/톤(정미, CIF)이었다. 가격이 높았던 일부 기간을 제외한 중국산 MMA의 평균 수입가격은 355달러/톤(정미기준), 표준편차는 60달러였다.

향후 국제 쌀 가격은 중국산 MMA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2003년 가격은 430달러/톤으로 설정하였다. 2004-06년 가격은 2003년 가격에 세계 주요 연구기관의 예측치를 연계시켜 추정하여 2004년에는 346달러/톤, 2005년에는 329달러/톤, 2006년 339달러/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4년 가격은 생산증가율 둔화와 인구 및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2006년 이후 연평균 2.8~4.1% 상승하여, 355달러/톤을 중심으로 285~425달러/톤 사이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07-2014년 가격은 선형 보간법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5-2. 국제 쌀 가격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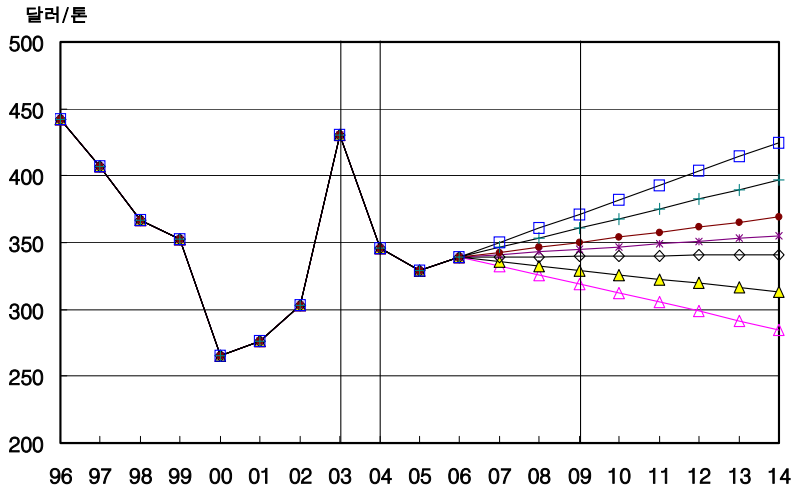

향후 중장기 원/달러 환율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며, 현 수준과 유사하거나(1,100원~1,200원/달러 박스권) 혹은 안정적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고려하여 매년 0.5%, 1.0%씩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하였다(1,100원/달러, 1,050원/달러).

제 6 장

관세화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 분석 및 협상 전략

1. 관세화 시의 예상 수입량

DDA의 이행개시를 2007년, 그리고 국제 쌀 가격을 평균수준인 355달러/톤, 대미환율을 1,173원/달러에서 2014년 1,100원/달러까지 떨어뜨렸을 때(연평균 0.5% 하락)를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할 때, 관세화에 따른 2009년과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 2009년 예상 쌀 수입량은

표 6-1. 2009년 예상 쌀 수입량(TE 433% / TE 486%)

SSG 적용 여부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10% 감축	30% 감축	5% 감축	20% 감축
미적용	5.9% / 5.9%	5.9% / 5.9%	4.3% / 4.3%	4.3% / 4.3%
적 용	5.9% / 5.9%	5.9% / 5.9%	4.3% / 4.3%	4.3% / 4.3%

기준치: 2007년 DDA 이행, 국제가격 355달러/톤, 환율 1,100원으로 하락.

MMA 4.3~4.9% 상당량이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이 될 경우 MMA 5.9~7.5% 상당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6-1>. 2014년의 예상 쌀 수입량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 MMA 7.1~7.5% 상당량이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이 될 경우 MA 4.9% 상당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6-2>.

한편 DDA 이행개시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변경해도 SSG 발동 여부에 관계없이 예상 쌀 수입량은 TRQ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 및 6-4>.

표 6-2. 2014년 예상 쌀 수입량(TE 433% / TE 486%)

SSG 적용 여부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10% 감축	30% 감축	5% 감축	20% 감축
미적용	7.1% / 7.1%	7.5% / 7.1%	4.9% / 4.9%	4.9% / 4.9%
적 용	7.1% / 7.1%	7.1% / 7.1%	4.9% / 4.9%	4.9% / 4.9%

기준치: 2007년 DDA 이행, 국제가격 355달러/톤, 환율 1,100원으로 하락.

표 6-3. 2009년 예상 쌀 수입량(2007년 개시 / 2008년 개시)

SSG 적용 여부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10% 감축	30% 감축	5% 감축	20% 감축
미적용	5.9% / 5.3%	5.9% / 5.3%	4.3% / 4.2%	4.3% / 4.2%
적 용	5.9% / 5.3%	5.9% / 5.3%	4.3% / 4.2%	4.3% / 4.2%

기준치: 국제가격 355달러/톤, 환율 1,100원으로 하락.

표 6-4. 2014년 예상 쌀 수입량(2007년 개시 / 2008년 개시)

SSG 적용 여부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10% 감축	30% 감축	5% 감축	20% 감축
미적용	7.1% / 7.1%	7.8% / 7.7%	4.9% / 4.8%	4.9% / 4.8%
적 용	7.1% / 7.1%	7.1% / 7.1%	4.9% / 4.8%	4.9% / 4.8%

그림 6-1. 시나리오별 예상 쌀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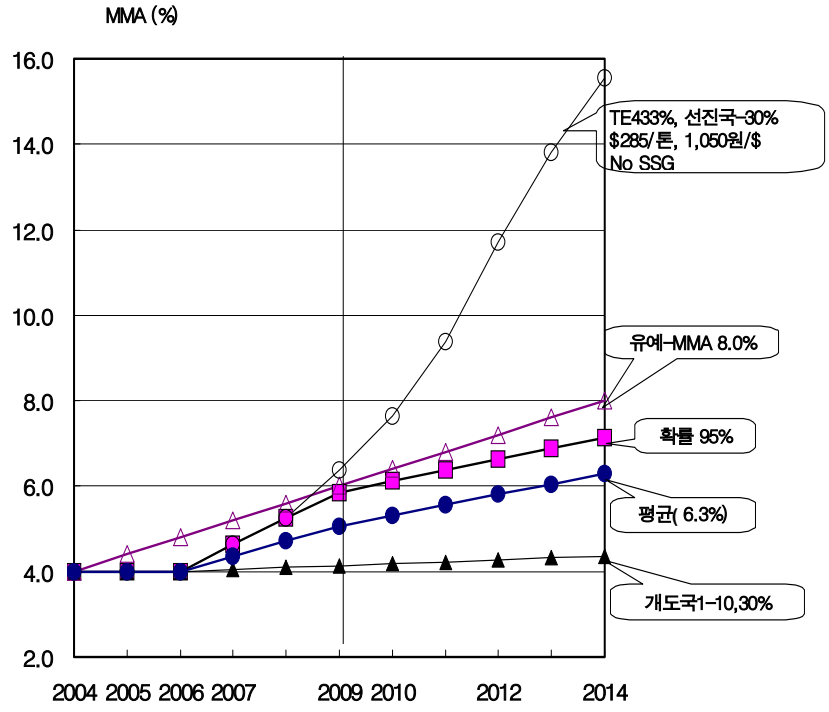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쌀의 초기관세치를 변화시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쌀의 국제가격 흐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쌀의 국제가격이 355달러/톤을 유지하는 이상 쌀 수입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국제가격을 과거 추세의 최저수준인 285달러/톤까지 하락하고, 환율도 2014년 1,050원/달러까지 떨어질 경우(연 평균 1%씩 하락) 2009년 예상 쌀 수입량은 MMA 4.3~5.9% 상당량으로 기준 시나

표 6-5. 2009년 예상 쌀 수입량: TE 433%
(285달러/톤-1,050원 / 달러 / 355달러/톤-1,100원/달러 / 425달러/톤-1,173원/달러)

SSG 적용 여부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10% 감축	30% 감축	5% 감축	20% 감축
미적용	5.9 / 5.9 / 5.9	6.4 / 5.9 / 5.9	4.3 / 4.3 / 4.3	4.3 / 4.3 / 4.3
적 용	5.9 / 5.9 / 5.9	5.9 / 5.9 / 5.9	4.3 / 4.3 / 4.3	4.3 / 4.3 / 4.3

표 6-6.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TE 433%
(285달러/톤-1,050원/달러 / 355달러/톤-1,100원/달러 / 425달러/톤-1,173원/달러)

SSG 적용 여부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10% 감축	30% 감축	5% 감축	20% 감축
미적용	8.0 / 7.1 / 7.1	15.5 / 7.5 / 7.1	6.0 / 4.9 / 4.9	8.3 / 4.9 / 4.9
적 용	7.5 / 7.1 / 7.1	10.3 / 7.1 / 7.1	5.5 / 4.9 / 4.9	5.6 / 4.9 / 4.9

표 6-7. 2009년 예상 쌀 수입량: TE 486%
(285달러/톤-1,050원/달러 / 355달러/톤-1,100원/달러 / 425달러/톤-1,173원/달러)

SSG 적용 여부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10% 감축	30% 감축	5% 감축	20% 감축
미적용	5.9 / 5.9 / 5.9	5.9 / 5.9 / 5.9	4.3 / 4.3 / 4.3	4.3 / 4.3 / 4.3
적 용	5.9 / 5.9 / 5.9	5.9 / 5.9 / 5.9	4.3 / 4.3 / 4.3	4.3 / 4.3 / 4.3

표 6-8.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TE 486%
(285달러/톤-1,050원/달러 / 355달러/톤-1,100원/달러 / 425달러/톤-1,173원/달러)

SSG 적용 여부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10% 감축	30% 감축	5% 감축	20% 감축
미적용	7.1 / 7.1 / 7.1	13.6 / 7.1 / 7.1	4.9 / 4.9 / 4.9	6.7 / 4.9 / 4.9
적 용	7.1 / 7.1 / 7.1	8.7 / 7.1 / 7.1	4.9 / 4.9 / 4.9	5.6 / 4.9 / 4.9

리오의 결과와 동일했으나,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은 MMA 13.6~15.5% 상당량으로 전망되어 예상 수입량의 변동 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때 SSG를 적용하면 MMA 기준 8.7~10.3%로 쌀 수입이 억제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6-5, 6-6, 6-7, 6-8>.

쌀에 관세상한이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세화에 따른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은 SSG를 활용할 경우, MMA 4.9~10.3% 상당량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SSG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 쌀 수입량은 MMA 기준 4.9~15.5% 상당량으로 수입량의 변동 폭이 매우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확률적 접근을 통한 동등성 분석

2.1. 확률적 접근의 필요성

관세화에 따른 예상 수입량 전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국제가격과 환율 수준에 따라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은 작게는 MMA 4.9%, 많게는 MMA 15.5% 상당량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고려한 쌀 시장 개방 시나리오는 DDA 농업협상의 진행 추이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있는 반면 가능성이 매우 낮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관세화 또는 관세화유예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보다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DDA에 관한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관세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한 확률적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 경우 관세화 시 예상되는 쌀 수입량이 관세화유예 연장에 따른

MMA보다 작아질(또는 커질) 확률이 구해지며, 그를 기초로 삼아,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예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은 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관세화 시 예상 수입량의 확률 분포

2.2.1. 2009년의 예상 수입량 확률 분포

개도국 가능성을 50%, SSG 발동 가능성을 80%, 환율은 2004년 환율이 향후에도 계속 된다고 설정한 경우, 관세화 시 예상되는 2009년 쌀 수입량은 평균적으로 MMA 약 5.1% 상당량(26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MA 5.9% 상당량(30만 톤)를 넘어 수입될 가능성은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9, 6-10>.

표 6-9. 2009년 예상 수입량 확률 분포(TE: 433%, 평균 5.07)

MMA	4.00	4.00 ~4.14	4.14 ~4.33	4.33 ~4.56	4.56 ~5.86	5.86 ~5.88	6.06 ~6.91
확률 (%)	2.4	23.8	2.1	23.8	0.3	47.5	0.2
누적확률(%)	2.4	26.1	28.3	52.0	52.3	99.8	100.0

주: 95% 점은 MMA 5.874%임.

표 6-10. 2009년 예상 수입량 확률 분포 (TE: 486%, 평균 5.07)

MMA	4.00 ~4.11	4.11 ~4.14	4.14 ~4.47	4.47 ~4.56	4.56 ~5.70	5.70 ~5.88	5.80 ~6.11
확률 (%)	2.5	23.8	2.1	23.8	0.3	47.5	0.1
누적확률(%)	2.5	26.3	28.4	52.1	52.4	99.9	100.0

주: 95% 점은 MMA 5.857%임.

확률적 접근에 따른 2009년 예상 수입량은 대부분 TRQ 증량의무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 유지 가능성 및 환율에 대한 전망(하락 가능성)이 변하더라도 2009년의 동등성 수준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는 2009년이 DDA의 실제 이행 2년차에 해당되어 관세감축의 실질적

표 6-11. 환율 및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 변화 효과, 2009

	환율(원/$)	TE 433%		TE 486%	
		평균	95%	평균	95%
기준치	1,173 (개도국 50%)	5.1	5.9	5.1	5.9
1,173원	개도국 60%	4.9	5.9	4.9	5.9
	개도국 70%	4.8	5.9	4.8	5.9
	개도국 80%	4.6	5.9	4.6	5.9
	개도국 90%	4.5	5.9	4.5	5.9
1,100원	개도국 60%	4.9	5.9	4.9	5.9
	개도국 70%	4.8	5.9	4.8	5.9
	개도국 80%	4.6	5.9	4.6	5.9
	개도국 90%	4.5	5.9	4.5	5.9
1,050원	개도국 60%	4.9	5.9	4.9	5.9
	개도국 70%	4.8	5.9	4.8	5.9
	개도국 80%	4.6	5.9	4.6	5.9
	개도국 90%	4.5	5.9	4.5	5.9

[6] 2009년 전망치에 개도국지위, 환율변동, SSG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제시장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 이들 변수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의 결과는 이들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이고, 세계시장가격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과 함께 SSG의 발동으로 예상 수입량이 대부분 TRQ 증량수준 이내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4년의 예상 수입량은 다음 절의 민감도 분석에서 보듯이 관세감축 폭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2. 2014년의 예상 수입량 확률 분포

관세화 시 예상되는 2014년 쌀 수입량은 평균적으로 MMA 6.3% 상당치 (32만 3천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MMA 7.1% 상당치 (36만 6천 톤)을 초과하여 수입될 가능성은 5% 이하로 나타났으며, MMA 5.5% 상당치 이하로 수입될 가능성도 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확률 분포(TE: 433%, 평균 6.29)

MMA	4.0	4.00 ~4.36	4.36 ~5.35	5.35 ~5.50	5.50 ~6.62	6.62 ~7.13	7.13 ~11.6	11.6 ~28.8
확률 (%)	1.4	23.1	0.4	23.9	0.9	45.3	2.8	2.2
누적확률(%)	1.4	24.5	25.0	48.9	49.8	95.1	97.8	100.0

주: 95% 점은 MMA 7.127%임.

표 6-13.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확률 분포(TE: 486%, 평균 6.28)

MMA	4.00	4.36	5.50	5.62 ~6.68	7.13	7.68 ~8.52	8.93 ~16.2	17.1 ~28.9
확률 (%)	0.6	23.8	23.8	1.7	46.8	0.6	1.7	1.1
누적확률(%)	0.6	24.3	48.1	49.8	96.6	97.2	98.9	100.0

주: 95% 점은 MMA 7.112%임.

한편 환율변동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환율이 매년 0.5%씩 떨어져 2014년 1,100원/달러가 되면 동등성 수준은 MMA 7.13~7.45% 상당량으로 증가하고, 매년 1.0%씩 떨어져 2014년 환율이 1,050원/달러까지 하락하면 동등성 수준은 MMA 7.38~7.48% 상당량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환율이 1% 하락하면 예상 수입량 평균은

그림 6-2.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누적확률 분포(TE: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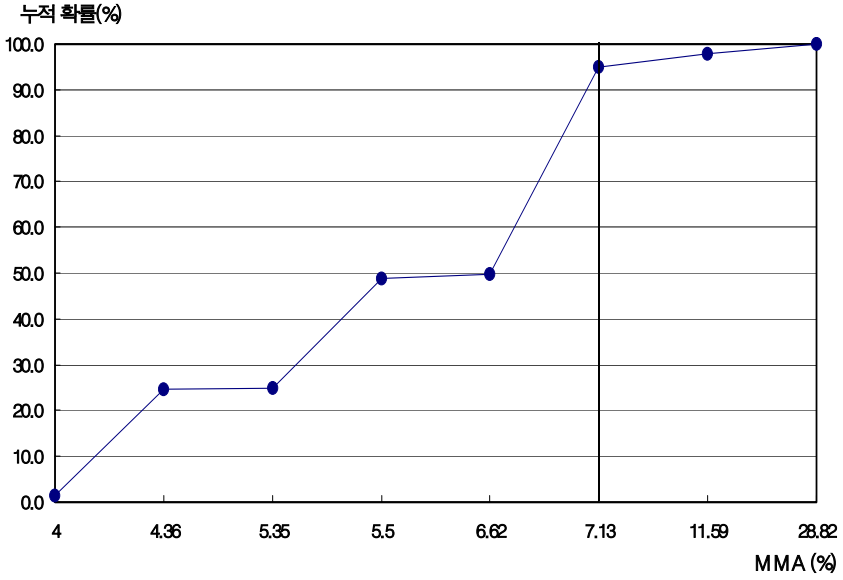

표 6-14. 환율 변화가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

환율(원/달러)	TE 433%		TE 486%	
	평균	95% 수준	평균	95% 수준
1,173	6.3	7.13	6.28	7.13
1,173 ⇒ 1,100	6.3	7.45	6.30	7.13
1,173 ⇒ 1,050	6.4	7.48	6.38	7.38

0.1 정도 올라가고, 이에 따른 95% 퍼센타일은 0.3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예상 수입량의 확률 분포의 민감도 분석

2.3.1.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 변화

먼저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동등성 수준을 검토해 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을 50%로 부여하고 이를 기준치로 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을 0~100%까지 변화시켰을 때 예상 평균 수입량은 MMA 4.96(5.03)~7.62(7.80)% 상당량으로 나타났다. 한편 95% 점은 MMA 5.50(5.50)~9.26(11.83)% 상당량으로 나타났다. 단, 괄호 안은 환율을 1,050원/달러로 내린 경우이다.

개도국에 대한 확률을 10% 변화시켰을 때 예상 평균수입량 수준은 0.27~0.28%씩 변하고, 95% 점은 0.38~0.63%씩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이 80% 이상이라면 환율 변화가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

표 6-15. 개도국 확률 변동 시 수입량 변화

개도국에 부여한 확률	환율 1,173		환율 1,050	
	평균	95%	평균	95%
0	7.62	9.26	7.80	11.83
20	7.08	8.01	7.25	9.64
50	6.29	7.13	6.42	7.48
80	5.49	7.13	5.59	7.13
100	4.96	5.50	5.03	5.50

주: TE는 433%, SSG확률은 80%이며 시장개방 폭은 기준치를 따르고 있음.

가능성이 80%일 경우 95% 점은 환율 변화에 관계없이 MMA 7.13% 상당량이므로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수입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 SSG 발동 가능성 변화에 따른 동등성 수준 변화

기준치로서 SSG 발동 가능성에 80%를 부여하였고 SSG 발동 가능성을 0~100%까지 변화시켰을 때 예상 평균 수입량은 MMA 6.22 (6.31)~6.56(6.84)% 상당량으로 나타났다. 한편 95% 점은 MMA 7.13 (7.48)~8.62(11.12)% 상당량으로 나타났다. 단, 괄호 안은 환율이 1,050 원/달러인 경우이다.

SSG 가능성을 10%씩 변화시켰을 때 예상 평균수입량 수준은 0.03~0.05%씩 변하고, 95% 점은 0.15~0.36%씩 변하였다.

개도국 지위와 마찬가지로 SSG 발동 가능성이 80% 이상이라면 환율 변화가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SSG 발동 가능성이 80%일 경우 95% 점은 MMA 7.13~7.48% 상당량으로 나타나 환율하락 시 0.35%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SSG 확률 변동 시 수입량 변화

SSG에 부여한 확률	환율 1,173		환율 1,050	
	평균	95%	평균	95%
0	6.56	8.62	6.84	11.12
20	6.49	7.94	6.73	10.18
50	6.39	7.48	6.58	9.52
80	6.29	7.13	6.42	7.48
100	6.22	7.13	6.31	7.48

주: TE: 433%, 개도/선진: 0.5/0.5, 시장개방폭: 기준치.

2.3.3. 쌀 관세감축 폭 가능성 변화에 따른 동등성 수준

지금까지는 <표 6-17>에 나와 있는 기준치의 확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쌀 관세감축 폭에 부여한 확률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확률 1>에서 <확률 4>를 설정하였다. <확률 3>, <확률 4>는 관세상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우로 <확률 3>은 소폭의 관세감축 가능성에 높은 확률을 부여한 반면 <확률 4>는 큰 폭의 관세감축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였다. <확률 1>, <확률 2>는 관세상한 가능성을 높이면서 <확률 2>는 소폭의 관세감축 가능성에 높은 확률을 부여한 반면 <확률 1>은 큰 폭의 관세감축에 높은 확률을 부여한 것이다.

관세감축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확률은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TRQ 확대 폭은 전과 동일하며 선진국은 5년 동안 최근 소비량의 8%까지 증량하고, 개도국은 10년 동안 최근 소비량의 5% 또는 6.6%까지 증량하도록 하였다.

표 6-17. 시나리오별 확률 부여

구분	관세 감축률	확률 1	확률 2	확률 3	확률 4	기준치
개도국	5%	0.05	0.40	0.10	0.40	0.30
	10%	0.15	0.30	0.20	0.30	0.35
	15%	0.30	0.15	0.30	0.25	0.20
	20%	0.40	0.05	0.40	0.05	0.10
	200%	0.10	0.10	0.00	0.00	0.05
선진국	10%	0.05	0.40	0.10	0.40	0.30
	15%	0.15	0.30	0.20	0.30	0.35
	20%	0.30	0.15	0.30	0.25	0.20
	30%	0.40	0.05	0.40	0.05	0.10
	150%	0.10	0.10	0.00	0.00	0.05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6-18>과 같다. <확률 1>, <확률 2>에서와 같이 관세감축 폭 확대 가능성을 높였을 때 평균 수입량은 MMA 6.50(6.70)~6.57(6.83)% 상당량으로 기준치에 비해 약 0.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점은 9.26(11.83)~10.48(13.01)%로서 기준치 보다 2.13(4.35)~3.35(5.5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상한 가능성을 배제한 <확률 3>, <확률 4>의 경우 평균 수입량은 MMA 6.05(6.10)~6.12(6.23)% 상당량이어서 기준치에 비해 약 0.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5% 점은 7.13~7.13(9.26(11.83)~10.48(13.01)%로서 기준치 보다 2.13(4.35)~3.35(5.53)% 높았다.

환율이 달러당 1,173원일 때 <확률 3>, <확률 4>의 95% 점에 해당하는 수입량은 기준치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확률 1>, <확률 2>의 경우 기준치와는 약 2~3%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관세상한의 가능성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95% 점에서의 예상 수입량이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18. 시장 개방 폭 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동

단위: %

시장 개방 폭	환율 1,173		환율 1,050	
	평균	95%	평균	95%
확률 1	6.57	10.48	6.83	13.01
확률 2	6.50	9.26	6.70	11.83
확률 3	6.12	7.13	6.23	7.48
확률 4	6.05	7.13	6.10	7.13
기준치	6.29	7.13	6.42	7.48

주: TE는 433%, 개도/선진: 0.5/0.5, SSG확률은 0.8을 부여하였음.

<확률 1>, <확률 3>은 시나리오 1에 낮은 확률을 부여하고 시나리오 4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확률 2>, <확률 4>는 시나리오 1에는 높게, 시나리오 4에는 낮게 확률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확률 1>, <확률 2>를 비교해 볼 때 낮은 증량 수준에 높은 확률을 적용한 <확률 2>가 <확률 1>보다 평균과 95% 점에서의 수입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확률 3>과 <확률 4> 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낮은 증량 수준에 높은 확률을 적용할수록 평균과 95% 점에서의 예상 수입량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을 기준으로 확률별 예상 수입량을 비교해 보면 확률 하락으로 인해 수입량이 높아지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확률 4>의 경우 환율이 달러당 1,050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관세상한의 설정 가능성이 배제되었고 낮은 증량 수준에 높은 확률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예상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협상 전략

3.1. 분석 결과에 기초한 협상 전략

쌀을 관세화 할 경우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의 평균은 MMA 6.3~6.4% 상당량이 되므로, 일단 이 수준을 동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화했을 경우, 실제 쌀 수입량이 예상되는 평균 수입량(MMA 6.3~6.4%)을 초과할 가능성도 50%나 되어, 예상 밖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쌀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상 평균 쌀 수입량를 기초로 삼아 관세화를 선택했는데, 실제

쌀 수입량이 사전에 예상한 수입량을 초과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수입은 국내 쌀 시장에 새로운 충격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관세화를 유예하면 미래의 쌀 수입량은 사전에 확정되어 쌀 수입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설령, 사후적으로 관세화 했을 경우 쌀 수입량이 관세화를 유예할 때의 MMA 보다 적었을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관세화 유예에 따른 MMA는 예상된 수준이므로 새로운 충격이 되지 못한다.

반면 관세화를 하면 DDA 이행 개시시점(2007 이나 2008년)까지 MMA를 현 수준인 4%에 고정시킬 수 있으나,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에는 2005년부터 MMA 증량이 시작된다.

한번 설정된 MMA는 돌이킬 수 없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일본과 대만의 경우, 쌀을 관세화 했더라면 실제 쌀 수입량이 MMA 5%에 머물렀을 것이나 관세화를 유예하였고, 그 결과 MMA 3%를 추가 증량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관세화유예에 따라 설정될 MMA중 일정 부분은 2005년부터 시장에 판매될 전망이다. 관세화를 할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MMA 관리방식은 통상마찰의 소지는 있으나, DDA이행 개시까지는 상대적으로 MMA 관리에 유리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관세화와 유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동등성 수준을 관세화시 예상 수입량이 유예하는 경우 보다 많아질 가능성(오판 가능성)이 5% 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이 경우 동등성 수준은 MMA 7.1~7.5% 상당량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는 MMA 7.1~7.5%를 수용하고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관세화 시 쌀 수입량이 이보다 적어 사후적으로 유예보다 관세화한 것이 더욱 유리한 선택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95%임을 뜻한다. 그러나 대신 예상 밖의 수입급증의 위험을 5%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즉 MMA 7.1~7.5%를 거절하고 관세화를 선택할 경우, 실제 쌀 수입량이 7.1~7.5% 이내가

될 가능성이 95%이지만 동시에 실제 쌀 수입이 이 수준을 초과하여 국내 시장에 예상 밖의 충격을 줄 가능성도 5% 존재하고 있다.

결국 MMA 7.1~7.5%로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은 예상 밖의 수입 급증의 위험을 5% 이내로 줄이기 위해 매년 MMA 0.8~1.1%[7] 상당량의 추가수입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관세화유예는 DDA 협상 결과에 따라 2007년 또는 2008년경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존재한다. 만약 2006년이나 2007년 경 DDA가 타결된다면,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여부, 민감(특별)품목의 관세감축 폭과 TRQ 증량 폭, SSG 존폐 여부가 확정될 것이다. 따라서 그때 가서 관세화 또는 유예지속을 판단하게 되면 지금 보다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동시에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은 실제 수입량이 MMA 8%를 넘어 수입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장점이 있다.

표 6-19.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2014년 예상 수입량

오판 확률	2005년 관세화 시 수입량 (MMA 기준, %)	MMA 8% 유예후 2007년 관세화 시 수입량 (MMA 기준, %)
오판 확률 5%	7.13	7.04
오판 확률 10%	7.07	
오판 확률 15%	7.01	
평 균	6.29	

[7]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입량은 MMA 6.3~6.4% 상당량이므로 MMA 7.1~7.5%는 이에 비해 MMA 0.8~1.1% 상당량 많은 것임.

MMA 8%로 유예한 후 2007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2014년 쌀 수입량은 MMA 7.04% 상당량이 되므로[8], 오판 확률 10~15%의 허용 한도 안에 있게 된다.

결국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MMA 8%로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은 실제 수입이 이를(MMA 8%)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대신 2005년부터 관세화한 경우(MMA 6.3%)에 비해 매년 MMA 0.7%(=7.04-6.3)의 추가수입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MMA 8%는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2014년 환율이 1,050원/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 관세화에 따른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이 증가하므로, 환율하락을 고려할 경우에는 동등성 수준이 MMA 8%를 다소 초과하게 될 수도 있다.

표 6-20. 동등성 분석 결과

	<1안>	<2안>	<3안>
	평균 예상 수입량에 기초할 경우	수입 급증의 위험성을 5%로 낮춘다면	
		유예를 지속할 경우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 고려
동등성 수준	MMA 6.3~6.4%	MMA 7.1~7.5%	MMA 8%+
비용	동등성 수준을 초과하여 수입이 급증할 우려 (50%의 가능성)	매년 0.8~1.1%의 추가 수입	매년 0.7~1.0%의 추가 수입

[8] 최근 발표된 정부의 쌀 협상 잠정발표에 따르면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조건이 지난 UR 때 보다 좋아, 유예도중 2007년이나 2008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2014년 예상 평균 수입량은 MMA 6.5~6.6% 상당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3.2. 협상 상대국별 입장에 따른 전략 수립

3.2.1. 미국

우리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쌀은 중국산 쌀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관세화시에는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 중국산 쌀과의 생산비 차이에 기초할 때 미국은 최소한 중국과의 단기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일본의 수입쌀 시장(SBS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을 변화 추이이다. 주로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민간자율수입(SBS)의 경우 미국의 점유율은 1995년 53%에서 2003년 18%로 하락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22%에서 79%로 수직 상승하였다. 따라서 가격경쟁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에 열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표 6-21. 일본 수입 쌀 시장에서 국별 시장 점유율(SBS의 경우)

단위: %, 톤

	미국	태국	호주	중국	기타	계
1995	53.4	2.3	18.1	22.3	3.8	10,694 (100.0)
1996	64.2	1.6	5.3	23.2	5.5	22,000 (100.0)
1997	62.9	1.7	5.7	25.2	4.6	55,141 (100.0)
1998	30.4	4.4	12.1	51.6	1.4	120,000 (100.0)
1999	30.7	3.1	12.2	52.2	1.9	120,000 (100.0)
2000	38.6	4.1	11.9	44.4	1.0	120,000 (100.0)
2001	25.2	0.4	8.5	65.7	0.2	100,000 (100.0)
2002	40.2	2.7	8.1	48.4	0.6	50,067 (100.0)
2003	18.2	1.1	1.6	78.8	0.3	100,000 (100.0)

자료: USDA GAIN Report. 각 연도. www.fas.usda.gov

한편 미국 자포니카 쌀의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물 부족 등 여러 가지 생산제약 요인에 따라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향후 대폭적인 생산 증대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 공급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의 쌀 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되거나 혹은 민간의 자율적인 수입비중이 늘어날 경우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은 우리나라의 관세화 유예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입해 주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국영무역을 통해 MMA 수입쌀의 구매 및 유통, 소비를 완전 통제하고 있으며, 산업용 및 가공용으로의 용도지정을 통해 소비자의 고급 미국산 쌀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미국쌀에 접근 가능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미국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국에 대한 협상전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세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관세화의 메시지를 기초로 우리의 기대수준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2.2. 중국

중국은 최근 일본, 스위스의 자본과 도정시설을 도입하여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성 정부들도 녹색식품 기준에 적합한 쌀 생산과 유통에 노력하고 있어 당분간 한국, 일본 등 수출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중국의 쌀 생산비는 미국의 쌀에 비해 낮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자포니카 주산지인 동북지역의 쌀 생산비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단립종의 1/3 수준으로 당분

그림 6-3. 미국과 중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비 비교

단위: 달러/1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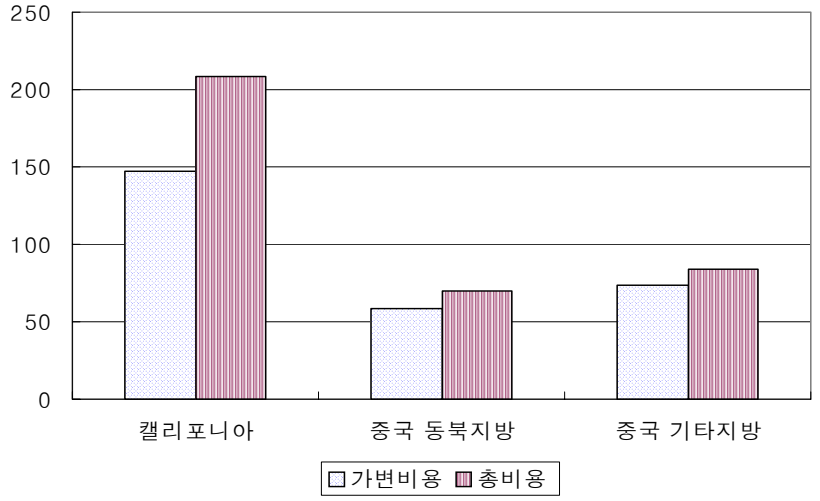

자료: 서진교 등(2004).

간 이러한 생산비 차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도로 건설 등 유통기반시설이 완비될 경우 수송비 절감을 통해 중국 쌀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품질경쟁력 향상과 가격경쟁력 우위에 힘입어 일본의 SBS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22.3%에서 2003년 78.8%로 증가하기도 하였다<표 6-21>.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자포니카 쌀의 수출능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인디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고급품을 선호하는 고소득층의 증가로 인해 자포니카 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자포니카 쌀의 주산지인 동북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용수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타 작물로의 경작전환으로 인해 쌀

재배면적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중국의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농민의 비농업 취업기회 확대와 도시로의 이농, 탈농 현상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중국의 자포니카 쌀 공급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쌀 수출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 정부가 국내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량을 결정한 후 이를 국영무역기업에 할당하고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와 같이 국내에서의 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수출량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중국 동북지역의 단립종 쌀의 주요 수출시장이기는 하나 두 나라에 대한 중국 단립종 쌀의 수출의존도는 높지 않은 편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표 6-22. 중국의 단립종 쌀 수출현황, 2002

수출국가	수출량(톤)	금액(달러)
합계 (단립종쌀+현미)	980,903	184,386+23,825
러시아	213,561	50,301
코트디부아르	204,508	28,806
쿠바	81,294	14,327
일본	75,223(단립종쌀)+315(현미)	23,800+162
북한	73,070	14,337
한국	70,775(현미)	18,799
리비아	62,998	14,339
카자흐스탄	44,884	11,677
나이지리아	20,117	2,739
불가리아	17,347(단립종쌀)+5871(현미)	3,442+1,203

자료: 海關總署.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은 일단 관세화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급의 수출여력은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중국의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이 자체 식량안보상 쌀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기초로 우리의 요구 수준을 관철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2003년 10월 이후 중국의 식량가격이 대폭 상승하여(30~40% 상승) 중국의 국내식량수급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쌀 재고량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쌀 수출여력에 한계가 있고 관세화가 중국의 이익에 항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통상협력 경험의 부족을 이용하여 먼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도 동시에 취해야 하며, 문화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자존심을 최대한 활용하는 다면적 접근이 중요하다.

3.2.3. 호주

호주의 쌀은 농업용수의 제한으로 향후 획기적인 생산증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가뭄으로 인해 향후 벼 재배면적은 13만ha, 생산량은 140만 톤(조곡기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호주정부가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농업재배방식을 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으로 보여 벼 재배에 이용되는 용수제한이 보다 엄격해지고 이에 따른 비용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상의 한계로 인해 호주의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체 MMA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MMA 쌀을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 수입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 판단되며 수준 높은 마케팅 기술을 앞세워 자국의 고품질 쌀을 판매하려 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호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관세화를 무기로 호주의 요구수준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3.2.4. 태국

태국은 주로 장립종 쌀을 수출하고 있는데 장립종 쌀은 태국의 가장 주된 수출 품종으로 10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다. 태국이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지만 그 대부분은 장립종 쌀로서 중・단립종 위주의 국내시장에 대한 이해관계는 적다고 판단된다. 다만 장립종 쌀의 수요가 일부 존재하고 향후 미미하지만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물량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5. 기타

인도의 쌀 생산은 날씨에 따른 변동이 심한 편이고, 주식인 쌀은 식량안보 작물이기 때문에 국내소비 우선의 정책 대상으로서 정부의 수매정책이 가동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 여력은 국내 시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인도는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립종 쌀을 주로 생산하지만, 60만 톤 정도의 고품질 향미(basmati)도 생산해 고소득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향미 등 주로 고품질 쌀 시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미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가격이나 수입제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요(선호) 측면에서 큰 폭의 수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인도의 고품질 쌀 생산의 확대는 관개 등 하부구조 개선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인디카 쌀에 대한 미미한 수요, 인도의 수출보조 지속 여부 등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인도의 진출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태국과 유사한 협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상당량의 쌀이 내수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 3개년 평균 수출량은 22만 톤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출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세계 5대 메이저 곡물 수출회사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의 분계사가 전 세계 곡물 수출량의 7% 정도를 취급하고 있어 한국 쌀 시장 개방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수출을 위한 쌀 재배면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가 적어 협상에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쌀과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인 축산물을 연계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

이집트의 쌀 수출은 최근에 들어올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은 북아프리카로 수출되며 우리나라까지는 운송비 관계로 중국산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MMA쌀 공개 입찰시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규격미달 문제로 한 번도 낙찰이 된 적이 없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쌀 협상에서 규격문제 등 주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해 올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쌀 협상의 기술적인 논의로 국한하여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UR협상에서 농업협정문 부속서 5B에 의거하여 관세화 조치를 유예하였으며 동 조항에 근거하여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쌀 협상이 가진 기본 성격과 의의를 검토하고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은 기본적으로 UR협상의 관세화 예외조치로서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협상상대국들에게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보를 해야만 한다. 또한 쌀을 관세화 했을 경우의 수입량은 DDA 농업협상의 모델리티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지불하는 MMA 물량의 잣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쌀 협상과 DDA 농업협상은 구분되어야 하지만 내용상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단립종 쌀의 국제 수급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세계 재고량이 급감하여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쌀을 관세화 했을 때 수입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관세화 유예를 했을 때의 수

입량과 비교해서 동등성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협상상대국들의 국내 수급 현황과 수출 여력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국제가격이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고 협상을 경험하였던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UR 농업협상에서 쌀 수입에 대하여 6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는 대신 기준 연도 평균 소비량의 4%에서 8%까지 MMA 물량을 증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유예기간 2년을 남겨 둔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대만은 2002년 1월 선진국 조건으로 WTO에 가입하면서 중요 품목인 쌀에 대해서 1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대신 기준 연도 평균 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MMA 물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입 2년째인 2003년 1월부터 관세화 유예를 중단하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계국과의 협상을 거치지 않고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 쌀의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한 결과 비교적 국내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WTO 가입과 함께 쌀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첫 해인 2002년부터 국내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즉시 나타났다. 이처럼 두 나라는 쌀 시장개방 방식은 유사하지만, 시장개방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과 대만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의 쌀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 상대국들은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를 위해 MMA 물량의 증량 요구와 함께 시장개방의 실질적인 효과 제고를 위한 TRQ 물량의 투명한 관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 상대국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시장개방의 수준(유예기간 및 MMA 증량 폭 등)이 쌀을 관세화 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량 보다 많다면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반대로 적다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협상전략 및 정책 선택의 핵심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간 동등성 수준의 판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등성 분석에 필요한 관세화 시의 예상 수입물량을 전망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먼저 쌀의 관세상당치는 국내외 가격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중에서 433%와 486%를 선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관세 감축폭은 최근 합의된 기본골격과 가장 구체적인 수준이 제시된 하빈슨 초안을 기초로 할 때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도국일 때는 10년간 5%, 10%, 15%, 20%의 감축률을 설정하였으며 관세상한이 설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가 될 경우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선진국일 때에는 5년간 10%, 20%, 30%, 40%를 감축하는 경우와 관세상한 150%가 설정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TRQ 증량폭은, 1999-2001의 3년 평균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선진국일 경우 5년간 8% 증량, 개도국의 경우 6.6%증량(특별품목의 경우 5%)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국제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인 285달러/톤에서 425달러/톤으로 폭넓게 설정하였고 환율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가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기 위해 현재 수준에서 0.5%, 1% 하락하였을 때를 상정하였다. 또한 관세화 한 품목에 한해서 SSG를 발동할 수 있으나 향후의 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 중이므로 SSG가 발동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관세상당치 및 시장개방폭 등에 관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2009년 예상 수입량은 시나리오별로 MMA 기준 4.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예상 수입량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4.9～7.5%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쌀에 관세상한이 설정될 경우를 제외한다면 관세화에 따른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은 SSG를 활용할 경우, MMA 4.9~10.3% 상당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SG를 미적용 했을 때의 예상 수입량은 MMA 기준 4.9~15.5%이다.

관세화에 따른 예상 수입량 전망은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관세화 또는 관세화유예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보다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DDA에 관한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관세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한 확률적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 경우 관세화 시 예상되는 쌀 수입량이 관세화유예 연장에 따른 MMA보다 작아질(또는 커질) 확률이 구해지며, 그를 기초로 삼아,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예를 결정해야 한다.

2009년 쌀 수입량은 개도국 가능성에 50%, SSG 발동 가능성에 80%, 2004년 환율이 향후에도 계속 된다고 설정했을 때 평균 MMA 약 5.1% 상당치(26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MA 5.9% 상당치(30만 톤)를 넘어 수입될 가능성은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위와 같은 경우 MMA 6.3% 상당치 (32만 3천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MA 7.1% 상당치 (36만 6천 톤)을 초과하여 수입될 가능성은 5% 이하로 나타났으며, MMA 5.5% 상당치 이하로 수입될 가능성도 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쌀을 관세화 할 경우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의 평균은 MMA 6.3~6.4% 상당량이 되므로, 일단 이 수준을 동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화 했을 경우, 실제 쌀 수입량이 예상되는 평균 수입량(MMA 6.3~6.4%)을 초과할 가능성도 50%나 되어, 예상 밖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쌀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동등성 수준을 관세화 시 예상 수입량이 유예하는 경우 보다 많아질 가

능성(오판 가능성)이 5% 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이 경우 동등성 수준은 MMA 7.1~7.5% 상당량 수준이 된다. 이는 MMA 7.1~7.5%를 수용하고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관세화 시 쌀 수입량이 이보다 적어 사후적으로 유예보다 관세화한 것이 더욱 유리한 선택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95%임을 뜻한다.

한편 일단 관세화를 유예한 다음 DDA 협상 결과에 따라 2007년 또는 2008년경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존재한다. DDA 농업협상의 모델리티가 결정되면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여부, 민감(특별)품목의 관세감축 폭과 TRQ 증량 폭, SSG 존폐 여부가 확정될 것이다. 따라서 모델리티가 확정된 후 관세화 또는 유예지속을 판단하게 되면 지금보다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만약 MMA 8%로 유예한 후 2007년에 관세화로 전환한다면 예상되는 2014년 쌀 수입량은 MMA 7.04% 상당량이 된다. 이는 실제 수입이 이를(MMA 8%)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대신 2005년부터 관세화한 경우(MMA 6.3%)에 비해 매년 MMA 0.7%(=7.04-6.3)의 추가수입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MMA 8%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협상상대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태국 및 호주를 비롯한 기타 다섯 개 국가와 협상해야 한다. 이들의 국내 수급 현황과 국제 쌀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요구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위에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에 비해 생산비가 높아 가격 경쟁력이 약하며 최근 물 부족 등 여러 가지 생산제약 요인에 따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대폭적인 생산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의 쌀 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되거나 혹은 민간의 자율적인 수입비중이 늘어날 경우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

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은 우리나라의 관세화 유예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입해 주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생산비가 낮아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최근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품질 경쟁력 또한 향상되었으나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근 고급품을 선호하는 고소득층의 증가로 인해 자포니카 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포니카 쌀의 주산지인 동북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용수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타 작물로의 경작전환으로 인해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 내의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농민의 비농업 취업기회 확대와 도시로의 이농, 탈농 현상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중국의 자포니카 쌀 공급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장립종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쌀 수요 패턴과는 맞지 않다. 호주는 용수의 제약으로 인해 쌀 공급여력이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타 협상 상대국들은 자포니카 쌀을 생산하지 않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 비용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협상 상대국들이 가진 제약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전략을 이용한다면 그들의 요구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고재모. 1997.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특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섭. 1999. “쌀의 민간 재고가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협중앙회.

김태곤. 1998. “일본의 쌀 관세화 결정과 과제.” 『농업농촌 동향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2000. “중국, 흑룡강성의 쌀산업 동향.” 『농림통계조사』.

김태곤, 정정길. 2004.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KREI 농정연구속보』 2004-14.

김홍운. 2000. “중국의 중·단립종 쌀산업 발전방향과 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27(2): 65-81.

농림부. 1994.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 ④, 일본』.

농림부. 2002. 『농업통상용어해설』.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림부. 2003. 『UR 농산물 이행계획 참고자료』. 국제농업국.

농정연구센터. 2002. “WTO체제와 한・일 쌀 산업의 장래.” 『한일공동심포지엄 주제발표 논문집』.

농촌진흥청. 1993. “아태지역에서 쌀의 지속적 생산증가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

농촌진흥청. 1996. “세계의 쌀 생산현황과 21세기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비봉출판사.

박노형. 1999. “WTO 분쟁 해결 절차.” 내부자료.

박동규. 1997. 『동남아 주요 미곡 수출국 및 호주의 쌀 수급 현황과 특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1999. “세계 식량수급전망과 안보전략.” 『제4회 한국 농업인의 날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박동규. 서진교. 2003. “DDA, 쌀재협상 전망과 쌀 수매·소득정책 과제.” 정책토론회자료.

박진환. 1993a.『국제 쌀시장의 성격에 관한 연구』. 농협대학농협발전연구소.
_____. 1993b.『중국의 쌀 생산』. 농협대학농협발전연구소.
_____. 1994a.『쌀: 세계의 쌀사정과 한국의 벼농사』. 비봉출판사.
_____. 1994b.『쌀시장의 개방과 한국의 벼농사』. 농협대학농협발전연구소.
_____. 1999. "동북아시아의 농업과 식량안보."『제4회 한국 농업인의 날 국제 학술대회 논문집』.
법무부. 1999.『농업통상법』. 삼성출판인쇄.
법무부. 2003.『WTO 농산물무역분쟁 사례 연구』. 문중인쇄.
서진교. 2003. "관세화에 의한 쌀 시장개방 확대의 파급 영향과 함축성" 사단법인 한국쌀연구회. 한쌀회 총서 제14권.
서진교 등. 2003.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 분야 주요 쟁점별 영향 분석. C2003-28.
서진교 등. 2004.『2004년 쌀 재협상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기호. 2004. "WTO 쌀 재협상의 통상법적 구조: 도하협상(DDA)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내부 자료.
이계임 등. 1992.『세계의 주요 국별 쌀 생산 및 교역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기. 2001. "한국 쌀 산업의 국경보호정책: 관세화 유예 최선의 선택인가?"『농업경제연구』 42(2).
이정환 등. 1997a.『쌀 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등. 1997b.『곡물의 중장기 수급 전망과 대응정책』 C9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등. 1999. "한국 쌀 농업의 선택: 관세화인가? MMA인가?", 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재옥 등. 1994.『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D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 서진교, 이병훈. 2003.『WTO 쌀 재협상의 시나리오별 영향분석과 대응 방안』. C200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태호. 1999. “모의실험에 의한 쌀 시장의 동태적 안정성 분석.”『농업경제연구』 40(2).

이태호 등. 2000. “동북아시아 식량수급의 현황과 전망: 자포니카 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북한 농업연구소.

이태호 등. 2003. “한국의 쌀 수입전략이 세계 자포니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2003년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임정빈, 이재옥, 어명근. 2000.『WTO 뉴라운드 대응 공동 연구: 농업 분야 영향분석』. C2000-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등. 2003.『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2004.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쌀산업.” 농림부장관 보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이현주. 2004.『대만의 쌀 시장 개방과 시사점』. 정책연구보고 P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태호 등. 1998.『미곡수매제도의 비교분석』. 농협중앙회.

최정섭. 1992.『미국 캘리포니아 쌀 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등. 1996.『호주의 밀・쌀・쇠고기 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한국의 쌀 협상과 일본과 대만의 경험.” 2004년 쌀 협상을 위한 국제 세미나 자료집.

한두봉, 신재근, 손황제. 1999. “쌀 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농업경제연구』 40(1).

한두봉. 1999a. “쌀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쿼타와 관세의 비교분석”.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_____. 1999b.『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시장개방』. 고려대 자연자원연구소.

허무열, 한동근, 여택동. 2001. “수입자율확대조치에 의한 쌀 시장개방의 효과분석.”『농업경제연구』 42(2).

國家統計局. 각 연도.『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査總隊. 각 연도.『中國農村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貿易外經統計司. 각 연도.『中國對外經濟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發展計劃委員會.『中國物價統計年鑑』. 각 연도.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發展計劃委員會等. 각 연도.『全國農産品成本收益資料匯編』. 내부 자료.

中國海關總署. 각 연도.『中國海關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ABARE. 2003.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Barichello, R. 1999. "Approaches to Food Security Towards the Next Millennium." Proceedings of the 4th Korean Farmer'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Dawe, D. 2002.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World Rice Market, 1950-2002. Food Policy 27(2002): 355-370.

Efron, B. 1979. "Bootstrapping Methods: Another Look at the Jackknife." *Annals of Statistics* 7.

Floyd, John E. 1965. "The Effects of Farm Price Supports on the Returns to Land and Labor in Agricultur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3.

Fuller, W.A., 1976. *Introduction to Statistical Time Series*. Wiley: New York.

Gado, Charisma L. 2004. "To Import or Not to Import." *PhilRice* 17: 10.

Gunter, Lowell F., Ki-Hong Jeong and Fred C. White. 1996. "Multiple Policy Goals in a Trade Model with Explicit Factor Marke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8.

Hansen, James et al. 2002. "China's Japonica Rice Market: Growth and Competitiveness."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RCS-2002.

Hertel Thomas, E. and Will Martin. 2000. "Liberalizing Agriculture and Manufactures in a Millennium Rou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Economy* 23.

Inside US Trade. 1999. *U.S. Back Away from Complaint Against New Japanese Rice Tariff.*

Nigam, Shailendra. 2004. Rice: Challenges in Production and Marketing in India. Presented in the FAO Rice Conference, Rome, Italy.

OECD. 1987. *National Policies and Agricultural Trade*: Japan. Paris.

Priyadarshi, Shishir. 2002. "Reforming Global Trade in Agriculture: A Developing-Country Perspective."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

Siuves, H.N. 2004. "The Expiry of the Peace Clause on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The Outlook Post-Cancun."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31(1): 25-42.

Steinberg, R.H. and T.E. Josling. 2003. "When the Peace Ends: The Vulnerability of EC and US Agricultural Subsidies to WTO Legal Challeng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6(2): 369-417.

IATRC.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1997. *Implementation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and Issues for the Next Round of Agricultural Negotiations.*

Tinbergen, J. 1952. *On the Theory of Economic Policy*. North Holland: Amsterdam.

USDA. ERS. 1999. "Implementation of Uruguay Round Tariff Reductions." *Agricultural Outlook.*

_____. 2001. "Rice: Background and Issues for Farm Legislation." RCS-0601-01.

_____. 2002a. "China's Food and Agriculture: Issues for the 21st Century."

_____. 2002b, 2003.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USDA. ERS. 2002c. "USDA Agricultural Baseline Projections to 2011."

USDA. FAS. 2003. "World Grain Situation and Outlook and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_____. 2004. India Grain and Feed Rice Update: April 2004. GAIN Report No. IN4030.

WSJ (Wall Street Journal). 2003. *Trade Talks Fail Amid Big Divide over Farm Issues* 15.

WTO. 1998. "Rectifications and Modifications of Uruguay Round Schedules." G/MA/TAR/RS/57.

_____. 2003. *WTO Agriculture Negotiation: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 15.

_____. Agreement on Agriculture. MTN/FA II-A1A-3.

_____. various documents of the negotiation on agriculture.

연구보고 R474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 전략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2.
발 행 2004.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전화 02-739-3911~5 E-mail:munwonsa@Chollian.Net

ISBN 89-89225-65-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